Hi Seoul SOUL OF ASIA 창의시정 서울을 움직이는 힘

발 행 인 : 서 울 특 별 시 장
편 집 인 : 홍 보 기 획 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태평로1가 31)
☎ 731-6113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796호 2007. 10. 4.(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훈령]
제947호 서울특별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4
[입법예고]
제2007-1802호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 : //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3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 : 00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수송 → D일 보급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서울특별시

◈ 고시

제2007-342호 금호 제1-7구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8
제2007-343호 공사용자재중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제품 및 사유 공표 ····· 9
제2007-344호, 34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9
제2007-346호 도시관리계획[경희대앞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 ····· 16
제2007-3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 64
제2007-349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내용 정정 ····· 79

◈ 공고

제2007-177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80
제2007-1777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81
제2007-17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등록취소 ····· 81
제2007-1781호 저공해장치(엔진) 반납절차 및 반납대행자 지정 ····· 82
제2007-1784호 측량업 신규등록 ····· 83
제2007-178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 83
제2007-1787호 2007년도 제18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87
제2007-1789호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행정처분 ····· 88
제2007-179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 88
제2007-179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 89
제2007-1795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사항 ····· 90
제2007-1798호 측량업 신규등록 ····· 90
제2007-1800호 도시계획시설(능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안) 열람 ····· 90
제2007-1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 91

◈ 구고시

제2007-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용산구) ····· 93
제2007-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 작성(광진구) ····· 96
제2007-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성북구) ····· 99
제2007-88호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성북구) ····· 103
제2007-75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변경인가 (강북구) ····· 103
제2007-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도봉구) ····· 104
제2007-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강서구) ····· 106
제2007-71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강서구) ····· 109
제2007-77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구로구) ····· 109
제2007-56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영등포구) ····· 113
제2007-6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동작구) ····· 115
제2007-6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동작구) ····· 115
제2007-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강동구) ····· 116
제2007-6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일자산자연공원 조성)실시계획(변경) 인가(강동구) ····· 120

◈구공고
제2007-66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열람(도봉구) ····· 123
제2007-6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서대문구) ····· 123

◈사업소고시
제2007-191호, 192호, 193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127

◈사업소공고
제2007-58호 소방시설업 등록(송파소방서) ····· 128

◈기타
제2007-762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포항시) ····· 129

자 치 법 규

[훈 령]

서울특별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7년 10월 4일

◈ 서울특별시훈령 제947호

서울특별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일부 사업소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자로 전환결정된 근로자를 상근인력 정수에 포함시키고, 퇴직 등으로 결원된 정수를 감축하여 기관별 정수를 재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등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관리부서의 기관명칭을 개정함.

1) 시립아동병원 → 시립어린이병원

2) 교통방송본부 → 교통방송

나. 부서별 정수를 조정함.

1)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순노무원(단순잡역조무인부) 7명 증원(0명 → 7명)

2) 녹지사업소 단순노무원(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 퇴직으로 인한 7명 감축(38명 → 31명)

[별표 1]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 관련)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300일이상 고용 상근인력의 정수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소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 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359	142	135			7	130	87
사업소 소 계	359	142	135			7	130	87
상수도 사업본부	7	7				7		
건설안전본부	130						130	
녹지사업소	31	31	31					
남산공원 관리사업소	26	26	26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15	15	15					
한강사업본부	123	63	63					60
중랑 물재생센터	22							22
난지 물재생센터	5							5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계	경비 청원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소계	과적차량
총 계	557	557		
본 청 소 계	64	64		
총 무 과	64	64		
직속기관 소계	19	19		
보건환경연구원	6	6		
서울종합방재센터	9	9		
소 방 학 교	4	4		
사 업 소 소 계	473	473		
상수도사업본부	103	103		
건설안전본부	100	100		
데이터센터	3	3		
시립어린이병원	3	3		
시립서북병원	4	4		
시립은평병원	2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45		
시립미술관	3	3		
녹지사업소	2	2		
남산공원관리사업소	3	3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19	19		
교통방송	6	6		
한강사업본부	164	164		
중랑물재생센터	7	7		
난지물재생센터	9	9		
의회사무처소계	1	1		
의 회 사 무 처	1	1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7-1802호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7년 10월 4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책임분담 의지 표명
   - 나.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제한적인 보육료 지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양육부모에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확보
   - 다. 상대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 경감을 실현하고 지원대상 연령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 실현

2. 주요내용
   - 가.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정의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 나.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시장의 경제적 비용경감 노력 의무, 부모의 선택권 존중, 지원의 형평성 추구, 중복지원 배제 및 신청주의 등 기본원칙 선언
   - 다. 조례 적용범위와 둘째 이후 자녀, 셋째 이후 자녀 및 삼생아를 출산·양육하는 보호자 등 지원 대상 명확화
   - 라.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지원 방식에 대해 시설을 통한 보육료 지원 및 양육지원 수당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규정
     - 가정 내 보육 셋째 이후 영·유아 : 월10만원 수당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셋째 이후 영·유아 : 보육료 50%
     - 삼생아(세쌍둥이) 이상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저출산대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별관 1동 저출산대책담당관 ☎02) 6321-4353 E-mail : kenos@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2호

금호 제1-7구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산 3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은 본 건 정비계획 결정도면으로 갈음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 제1-7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해제	금호 제1-7 주택재개발구역	성동구 금호동1가 산 37번지 일대	7,770	-	감 7,770	
신설	금호 제1-7 주거환경개선구역	성동구 금호동1가 산 37번지 일대	-	8,150	8,150	2필지 추가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8,150	증8,150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	8,150	증8,150	100.0	
	공 원	-	8,150	증8,150	100.0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공 원	근 린 공 원	성동구 금호동1가 산37-1번지 일대	650,987	659,137	8,150	응봉근린공원

3)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공원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존 58세대 계획 - 세대 (감 58세대)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496) 및 성동구청 주택과(☎ 02)2286-559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3호

공사용자재중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제품 및 사유 공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 직접구매할 수 없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사용자재중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제품 및 사유

제품명	물품분류 번 호	세부품명	산 업 분류번호	직접구매할 수 없는 사 유	비고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08	아스팔트콘크리트	26921	하자책임 일원화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30131508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26326	업체간 과열경쟁 등 사회적 물의 발생	

※ 비고 :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관급으로 구매 가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4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7호(2007.08.23)로 고시된 성북구 보문동 3가 225번지 일대 보문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주요내용

가. 성북구 보문동 225-70번지 일대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C	29	보문동	225-70	3.8	190%	12층이하	60%	3	주 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변경없음				3.1	변경없음			2	변경없음		

※ 건축물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일부지역 제척

보문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보문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치 및 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성북구 보문동 3가 225번지 일대	31,172.37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합 계		31,172.37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9,622.79	30.87	
	도 로	2,076.86	6.67	
	공공공지	816.20	2.62	
	어린이공원	6,729.73	21.58	
택 지	소 계	21,549.58	69.13	
	택지 1	19,290.55	61.88	분양/조합원
	택지 2	2,259.03	7.25	임대주택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95	20~45	간선도로	일반도로	1,680	숭인동 85-3	보문동1가 안감내길	-
변경	대로	3	195	20~45	간선도로	일반도로	1,680 (290)	숭인동 85-3 (보문동3가 225-143)	보문동1가 안감내길 (보문동3가 218-74)	( ) 구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
기정	중로	2	556	15	국지도로	일반도로	2,000	보문동 중로3-9	혜화동 로타리	-
변경	중로	2	556	15	국지도로	일반도로	2,000	보문동 중로3-9	혜화동 로타리	일부구간 도로확장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3	-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40	보문동 210-1	보문동 189-1	노선신설 및 일부확폭
기정	소로	3	43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290	보문동 219-1	보문동 225-279	-
변경	소로	3	43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70	보문동 219-1	보문동 218-52	노선 축소

나)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보문동 218-74번지 일대	6729.73	공공공지(5,106㎡) → 어린이공원 (정형화:1,623.73㎡)

다) 공공공지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공공지	보문동 225-17번지 일대	816.20	

라) 철도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비 고
	시설명	세분의시설	기점	종점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은평구 신사동 24번지 일대	중랑구 신내동 355일대	8~20	36,400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은평구 신사동 24번지 일대 (보문동 225-143)	중랑구 신내동 355일대 (보문동 187-1)	8~20	36,400 (290)	(5,800)	( )구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보문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31,172.37	보문동3가 225번지 일원	168	-	-	-	168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면적 (㎡)	건축시설 계획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연면적 (㎡)	주된용도
신설	택지-1	보문동3가 225-274번지 일대	19,290.55	60% 이하	230% 이하	15층이하 (50m이하)	75,573.92 이하	공동주택 부대시설
신설	택지-2	보문동3가 218-11번지 일대	2,259.03	60% 이하	23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 총 건립세대수의 80% 이상 ○ 세입자용 임대주택 : 총 건립세대수의 17% 이상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택지1	공동주택(조합/분양)	19,290.55	보문동3가 225-274번지 일대	19,290.55	
택지2	공동주택(임대)	2,259.03	보문동3가 218-11번지 일대	2,259.03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
관리처분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감) 158세대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보문동3가 218-11번지 일대	2,259.03	1개동	5,857.82㎡	79세대	전용면적 40㎡이하 : 79세대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

가) 변경 결정 취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밀도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수립

나)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1,172.37	감) 31,172.37	-	
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증) 31,172.37	31,172.37	
계	31,172.37	-	31,172.37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237) 성북구 도시개발과(☎02)920-36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9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변경(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주요내용

가.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B	12	동소문동	299	25	190%	12층이하	60%	3	주 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변경없음				2489	변경없음			2	변경없음		

※ 아리랑길 확장 완료에 따른 도로부지 일부 제척으로 면적 감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설치계획 변경 : 도면별첨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24,890.00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합 계		24,890.00	100.00	-
택 지	소 계	21,304.80	85.60	-
	택 지1	20,149.00	80.95	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택 지	택 지2	404.30	1.63	존 치 1
	택 지3	346.50	1.39	존 치 2
	택 지4	405.00	1.63	존 치 3
정비기반시설	소 계	3,585.20	14.40	-
	도 로1	597.00	2.40	-
	도 로2	988.20	3.97	-
	공 원	2,000.00	8.03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3	507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4	동소문동 6가 237	동소문동 6가 208-9	-
기정	소로	2	505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83	동소문동 6가 217-1	동소문동 6가 72	-
변경	중로	1	505	10~13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83	동소문동 6가 217-1	동소문동 6가 72	현황도로 포함

나) 공원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신 설	공원	어린이공원	동소문동6가 208-3 일대	2,000.00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4,890.00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164	3	-	-	161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부분	가구또는획지부분	위 치	면적(㎡)	건축시설계획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연면적(㎡)	주된용도
신규	택지1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20,149.00	25%이하	230%이하	19층이하(60m이하)	9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0%이상 ・임대주택 : 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의함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증) 59세대	-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	1	7,000㎡이하	74	전용면적 40㎡이하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

가) 변경 결정 취지

「201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밀도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수립

나) 변경내용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24,890.00	-	24,890.00	100.00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2,866.86	감)12,866.86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11,991.96	증)12,866.86	24,858.82	99.87	
준주거지역	31.18	-	31.18	0.13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7) 성북구 도시

개발과(☎02)920-36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6호

도시관리계획[경희대앞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08호(1998.8.22)로 결정된 경희대앞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경희대앞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①	경희대앞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회기동60번지일대	106,460	서고시 제1998-308호 ('98.8.22)
변경			동대문구 회기동60번지일대	116,073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편입	Ⓐ	경희대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 회기동 12-1번지 일대 · 편입면적 - 11,955㎡	· 청량초등학교앞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도로)결정에 따른 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구역추가편입
	Ⓑ		· 위치 - 회기동 35번지 · 폐지면적 - 528㎡	· 경희대 학교시설결정 예정필지 제척
	Ⓒ		· 위치 - 회기동 60-237번지 · 폐지면적 - 119㎡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내용이 없는 필지 제척
	Ⓓ		· 위치 - 회기동 60-205번지 일대 · 폐지면적 - 14㎡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내용이 없는 필지 제척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척	Ⓔ	-	·위치 - 회기동 64-81번지 일대 ·폐지면적 - 11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내용이 없는 필지 제척
	Ⓕ		·위치 - 회기동 64-1 일대 ·폐지면적 - 1,565㎡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20구역(회기동 62-34번지 일대)과 중첩되는 구역 제척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6,073	-	116,073	100.0	
주거지역	소 계	113,287	-	113,287	97.6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1,955	감)11,95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332	증)11,955	113,287	97.6	
상업지역	소 계	2,786	-	2,786	2.4	
	일반상업지역	2,786	-	2,786	2.4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회기동 12-1일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955	·추가적 계획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아문로길)	중심지 미관지구	회기동 346-7~346-28	48,000 (1,767)	2,000 (147)	양측 12	건고시 제109호(76.7.19)	
기정	②	미관지구 (아문로길)	중심지 미관지구	회기동 73-9~319-44	136,000 (1,019)	5,700 (85)	양측 12	건고시 제350호(72.8.14)	

주)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휘경동 321-21번지일대	4,033	건고시 제783호(64.2.12)	잡단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1,860	22,174	3	781	15,164	4	643	4,791	5	436	2,219
중로	1	701	14,342	1	701	14,342	-	-	-	-	-	-
소로	11	1,159	7,832	2	80	822	4	643	4,791	5	436	2,219

주) 상기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8	20	보조 간선 도로	1,230 (701)	임업 시험장	중1-9	일반 도로		건(서)고시 제13호(72.6.26)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20 (30)	회기동 61-4	회기동 71-4	일반 도로		서고시 제187호(78.5.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60 (20)	회기동 65-77	회기동 105-33	일반도로		서고시 제187호(78.5.1)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330 (10)	회기동 62-31	회기동 65-69	일반도로		서고시 제187호(78.5.1)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330 (-)	회기동 62-31	회기동 65-69	일반도로			구역내 일부면적 폐지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04 (104)	회기동 34-44	회기동 57-4	일반도로		건고시 제768호(63.1.24)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90 (116)	회기동 16-9	휘경동 321-53	일반도로		건고시 제768호(63.1.24)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340 (340)	회기동 16-9	회기동 339-20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50 (50)	회기동 339-20	회기동 346-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276 (74)	회기동 1-1	회기동 3-15	일반도로		건고시 제768호(63.1.24)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177 (177)	회기동 60-285	회기동 45-3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56 (56)	회기동 45-56	회기동 54-15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9	4	국지도로	95 (95)	회기동 16-11	회기동 33-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0	4	국지도로	85 (85)	회기동 45-58	회기동 5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1	2~6	국지도로	78 (78)	회기동 73-9	회기동 62-62	일반도로			구역외 부분은 도로결정 제외

주)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3	소로 2-3	· 면적 축소 - 폐지면적 : 62㎡	· 소로 3-11신설로 인해 소로2-3과 중첩되는 구역내 일부면적 폐지
소로 3-7	소로 2-4	· 규모확폭 - 폭원 : 6m → 8m · 연장축소 - 연장 : 390m → 340m	· 경희대길과 이문로의 교통량분산을 위한 대체도로 확폭
	소로 1-2	· 규모확폭 - 폭원 : 6m → 10m · 연장축소 - 연장 : 390m → 50m	· 휘경시장 재건축사업시 공공기여방안으로 기부채납된 도로확폭조성부분을 금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 2-5	·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77m	· 회기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 및 도로 신설
-	소로 2-6	· 신설 - 폭원 : 8m, - 연장 : 56m	· 회기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 및 도로 신설
-	소로 3-9	· 신설 - 폭원 : 4m, - 연장 : 95m	· 주변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확보를 위해 통학로 정비
-	소로 3-10	· 신설 - 폭원 : 4m, - 연장 : 85m	· 주변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확보를 위해 통학로 정비
-	소로 3-11	· 신설 - 폭원 : 2~6m, - 연장 : 78m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 위치한 현황도로의 정비 및 도로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회기동 346-18	-	증) 75.41	75.41		

※ 공공공지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신설 - 면적 : 75.41㎡	· 휘경시장 재건축사업시 공공기여방안으로 기부채납된 공공공지 부지를 금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소개발규모

구 분	최소대지규모(㎡)	비 고
이 문 로 변	90	
기 타 지 역	60	

나.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이문로변	제한없음	·적용예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회기로/경희대진입로변	1,000	
이 면 부	500	

다.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계획	-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도 지정)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되지 않은 2이상의 필지(최대개발규모이하로 획지 지정) ·개별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 것만 획지로 계획,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도 지정)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법적 최소대지분할규모이하,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 (규제)	·동일소유자 필지 ·개별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기 공동개발 필지)	-	
공동개발 (권장)	·법정규모 미달 필지 ·주변지역에 과소필지가 있는 경우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필지 ·부정형 필지와 그 인접 필지 ·적정 개발규모 미달 필지 ·동일소유자 필지라도 개발시기차 등으로 공동건축 불가능시	·적정규모·정형화·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유도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구 및 획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A1	476	39-3	321		· 공동개발(규제) : 39-5
기정	-			39-5	53		· 공동개발(규제) : 39-3
변경	①			39-3	321	374	· 획지계획
				39-5	53		
기정	-			39-4	102		· 공동개발(규제) : 38-1
변경				39-4	102		
기정	-	A2	1,057	108-6	185		
변경				108-6	185		
기정	-			108-17	178		
변경				108-17	178		
기정	-			108-15	165		
기정	-			108-16	148		
기정	-			108-18	171		
변경	①			108-15	165	484	· 획지계획
				108-16	148		
				108-18	171		
기정	-			108-20	210		
변경				108-20	210		
기정	-	A3	1,668	42-5	450		
변경				42-5	450		
기정	-			36-25	73		· 공동개발(규제) : 42-1
기정	-			42-1	231		· 공동개발(규제) : 36-25
변경	①			36-25	73	304	· 획지계획
				42-1	231		
기정	-			36-26	345		
변경				36-26	345		
기정	-			42-6	240		
변경				42-6	240		
기정	-			42-139	329		
변경				42-139	329		
기정	-	A4	3,362	42-40	162		
변경				42-40	162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42-94	294		
변경				42-94	294		
기정	-			42-37	149		
변경				42-37	149		
기정	-			42-36	166		
변경				42-36	166		
기정	-			16-69	159		
변경				16-69	159		
기정	-			42-35	148		
변경				42-35	148		
기정	-			42-34	149		
변경				42-34	149		
기정	-			42-31	152		
변경				42-31	152		
기정	-			42-82	291		
변경				42-82	291		
기정	-			42-81	132		
변경				42-81	132		
기정	-			42-2	63		·공동개발(규제) : 42-84
기정	-			42-84	238		·공동개발(규제) : 42-2
변경	①			42-2	63	301	·획지계획
				42-84	238		
기정	-			16-73	158		
변경				16-73	158		
기정	-			16-72	165		
변경				16-72	165		
기정	-			16-71	152		
변경				16-71	152		
기정	-			16-70	149		
변경				16-70	149		
기정	-			16-68	155		
변경				16-68	155		
기정	-			16-65	159		
변경				16-65	159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16-64	149		
변경				16-64	149		
기정	-			16-61	172		
변경				16-61	172		
기정	-	A5	3,189	60-59	338		
변경				60-59	338		
기정	-			60-55	161		
변경				60-55	161		· 공동개발(권장) : A5 (60-51, 60-53, 60-54)
기정	-			60-51	164		
변경				60-51	164		· 공동개발(권장) : A5 (60-53, 60-54, 60-55)
기정	-			60-50	165		
변경				60-50	165		· 공동개발(권장) : A5 (60-47, 60-49, 60-52)
기정	-			60-47	162		
변경				60-47	162		· 공동개발(권장) : A5 (60-49, 60-50, 60-52)
기정	-			60-46	129		
변경				60-46	129		· 공동개발(권장) : A5 (60-42, 60-44, 60-48)
기정	-			60-44	155		
변경				60-44	155		· 공동개발(권장) : A5 (60-42, 60-46, 60-48)
기정	-			42-98	136		
변경				42-98	136		
기정	-			60-40	159		
변경				60-40	159		
기정	-			60-41	126		
변경				60-41	126		
기정	-			60-42	334		
변경				60-42	334		· 공동개발(권장) : A5 (60-44, 60-46, 60-48)
기정	-			60-48	175		
변경				60-48	175		· 공동개발(권장) : A5 (60-42, 60-44, 60-46)
기정	-			60-49	179		
변경				60-49	179		· 공동개발(권장) : A5 (60-47, 60-50, 60-52)
기정	-			60-52	165		
변경				60-52	165		· 공동개발(권장) : A5 (60-47, 60-49, 60-50)
기정	-			60-53	159		
변경				60-53	159		· 공동개발(권장) : A5 (60-51, 60-54, 60-55)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60-54	155		
변경				60-54	155		· 공동개발(권장) : A5 (60-51, 60-53, 60-55)
기정	-			60-57	155		
변경				60-57	155		· 공동개발(권장) : A5 (60-58)
기정	-			60-58	172		
변경				60-58	172		· 공동개발(권장) : A5 (60-57)
기정	-	A6	2,960	60-106	169		
변경				60-106	169		
기정	-			60-105	149		
변경				60-105	149		
기정	-			60-104	208		
변경				60-104	208		
기정	-			60-102	202		·
기정	-			60-103	169		
변경	①			60-102	202	371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A6 (60-101)
				60-103	169		
기정	-			60-99	198		
변경				60-99	198		
기정	-			60-98	178		
변경				60-98	178		
기정	-			60-278	178		
변경				60-278	178		
기정	-			60-94	169		
변경				60-94	169		
기정	-			60-91	192		
변경				60-91	192		
기정	-			60-92	176		
변경				60-92	176		
기정	-			60-93	169		· 공동개발(규제) : 60-96
기정	-			60-96	208		· 공동개발(규제) : 60-93
변경	②			60-93	169	377	· 획지계획
				60-96	208		
기정	-			60-97	225		
변경				60-97	225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60-100	222		
변경				60-100	222		
기정	-			60-101	148		·
변경				60-101	148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A6-①
기정	-	A7	1,404	60-113	514		
변경				60-113	514		
기정	-			60-111	234		· 공동개발(규제) : 60-110
기정	-			60-110	235		· 공동개발(규제) : 60-111
변경	①			60-111	234	469	· 획지계획
				60-110	235		
기정	-			60-109	126		· 공동개발(규제) : 103-53
기정	-			103-53	16		· 공동개발(규제) : 60-109
변경	②			60-109	126	142	· 획지계획
				103-53	16		
기정	-			60-108	279		
변경				60-108	279		
기정	-	B1	146	36-6	60		
변경				36-6	60		
기정	-			36-7	86		
변경				36-7	86		
기정	-	B2	2,463	34-1	162		
변경				34-1	162		
기정	-			3-156	170		
변경				3-156	170		
기정	-			3-155	140		
변경				3-155	140		
기정	-			3-79	195		
변경				3-79	195		
기정	-			3-76	178		· 공동개발(규제) : 3-182
기정	-			3-182	109		· 공동개발(규제) : 3-76
변경	①			3-76	178	287	· 획지계획
				3-182	109		
기정	-			3-24	40		· 공동개발(규제) : 3-189
기정	-			3-189	60		· 공동개발(규제) : 3-24
변경	②			3-24	40	100	· 획지계획
				3-189	60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30	325		· 공동개발(규제) : 33-1
기정	-			33-1	387		· 공동개발(규제) : 30
변경	③			30	325	712	· 획지계획
				33-1	387		
기정	-			29-1	262		· 공동개발(권장) : 29-2
기정	-			29-2	120		· 공동개발(권장) : 29-1
변경	④			29-1	262	382	· 획지계획
				29-2	120		
기정	-			25	315		
변경				25	315		
기정	-	B3	1,369	16-47	100		
변경				16-47	100		
기정	-			16-46	139		
변경				16-46	139		
기정	-			16-43	149		
변경				16-43	149		
기정	-			16-42	129		
변경				16-42	129		
기정	-			16-41	147		
변경				16-41	147		
기정	-			31-1	150		· 공동개발(규제) : 구28-1
변경				31-1	150		
기정	-			16-38	160		
변경				16-38	160		
기정	-			16-36	146		
기정	-			16-37	146		
변경	①			16-36	146	292	· 획지계획
				16-37	146		
기정	-			16-35	103		
변경				16-35	103		
기정	-	B4	507	16-1	131		
변경				16-1	131		
기정	-			16-10	219		
변경				16-10	219		· 공동개발(권장) : B4 (16-12)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16-12	63		
변경				16-12	63		· 공동개발(권장) : B4 (16-10, 16-11)
기정	-			16-11	94		
변경				16-11	94		· 공동개발(권장) : B4 (16-12)
기정	-	B5	2,913	16-57	149		
변경				16-57	149		
기정	-			16-55	136		
변경				16-55	136		
기정	-			16-54	165		
변경				16-54	165		
기정	-			16-53	159		
변경				16-53	159		
기정	-			16-52	159		
변경				16-52	159		
기정	-			16-51	152		
변경				16-51	152		
기정	-			16-50	159		
변경				16-50	159		
기정	-			16-49	152		
변경				16-49	152		· 공동개발(권장) : B5 (10-48)
기정	-			16-48	137		
변경				16-48	137		· 공동개발(권장) : B5 (10-49)
기정	-			16-33	132		
변경				16-33	132		· 공동개발(권장) : B5 (16-32)
기정	-			16-32	146		
변경				16-32	146		· 공동개발(권장) : B5 (16-33)
기정	-			16-31	149		
변경				16-31	149		
기정	-			16-29	301		
변경				16-29	301		
기정	-			16-28	146		
변경				16-28	146		
기정	-			16-27	152		
변경				16-27	152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16-56	373		
변경				16-56	373		
기정	-			16-24	146		
변경				16-24	146		
기정	-	B6	1,288	16-23	136		
변경				16-23	136		
기정	-			16-19	139		
변경				16-19	139		
기정	-			16-18	149		
변경				16-18	149		
기정	-			16-13	224		
기정	-			16-15	120		
변경	①			16-13	224	344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6-②
				16-15	120		
기정	-			14	9		·공동개발(규제) : 16-16
기정	-			16-16	152		·공동개발(규제) : 14
변경	②			14	9	161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6-①, 16-17
				16-16	152		
기정	-			16-17	121		
변경				16-17	121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6-②
기정	-			16-20	238		
변경				16-20	238		
기정	-	B7	1,016	16-95	139		
기정	-			16-106	153		
변경	①			16-95	139	292	·획지계획
				16-106	153		
기정	-			16-96	109		
변경				16-96	109		
기정	-			16-97	146		
변경				16-97	146		
기정	-			16-6	119		
변경				16-6	119		
기정	-			16-90	112		
변경				16-90	112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16-91	119		
변경				16-91	119		
기정	-			16-92	119		
변경				16-92	119		
기정	-	B8	1,097	16-21	33		
기정	-			12-1	465		
변경	①			16-21	33	498	· 획지계획
				12-1	465		
기정	-			7-1	146		
변경				7-1	146		· 공동개발(권장) : B8 (7-3)
기정	-			7-3	165		
변경				7-3	165		· 공동개발(권장) : B8 (7-1)
기정	-			46	288		
변경				46	288		
기정	-	B9	1,812	17	32		
기정	-			18-2	3		
기정	-			36-30	24		
기정	-			13-1	152		
기정	-			11-13	16		
기정	-			13-2	3		
변경	①			17	32	230	· 획지계획(36-30 : 대지분할)
				18-2	3		
				36-30	24		
				13-1	152		
				11-13	16		
				13-2	3		
기정	-			11-7	205		
기정	-			8-7	36		
변경	②			11-7	205	241	· 획지계획
				8-7	36		
기정	-			8-5	73		
변경				8-5	73		· 공동개발(권장) : B9 (8-4)
기정	-			8-4	68		
변경				8-4	68		· 공동개발(권장) : B9 (8-5)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8-6	149		
변경				8-6	149		
기정	-			5-1	126		
변경				5-1	126		· 공동개발(권장) : B9 (5-2, 5-4)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9-③
기정	-			5-2	159		
변경				5-2	159		· 공동개발(권장) : B9 (5-1)
기정	-			3-38	64		
기정	-			4-1	192		
변경	③			3-38	64	256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9 (5-1, 47-4)
				4-1	192		
기정	-			5-4	152		
변경				5-4	152		· 공동개발(권장) : B9 (5-1)
기정	-			47-4	182		
변경				47-4	182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9-③, ④
기정	-			47-3	142		
기정	-			46-1	34		
변경	④			47-3	142	176	· 획지계획 (46-1,47-3 : 대지분할)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9 (47-4)
				46-1	34		
기정	-	B10	1,043	3-19	162		
변경				3-19	162		
기정	-			3-18	234		
변경				3-18	234		
기정	-			3-16	95		
변경				3-16	95		· 공동개발(권장) : B10 (3-17)
기정	-			3-17	172		
변경				3-17	172		· 공동개발(권장) : B10 (3-16)
기정	-			50-4	27		
기정	-			3-12	353		
변경	①			50-4	27	380	· 획지계획(50-4 : 대지분할)
				3-12	353		
기정	-	B11	1,471	16-87	274		
변경				16-87	274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16-85	238		
변경				16-85	238		
기정	-			16-84	169		
변경				16-84	169		
기정	-			16-81	130		
변경				16-81	130		
기정	-			16-79	116		
변경				16-79	116		
기정	-			16-77	155		
변경				16-77	155		
기정	-			16-78	122		
변경				16-78	122		
기정	-			16-123	131		
변경				16-123	131		
기정	-			16-83	136		
변경				16-83	136		
기정	-	B12	129	47-3	6		
기정	-			49-6	54		
기정	-			50-3	69		
변경	①			47-3	6	129	・획지계획(47-3 : 대지분할)
				49-6	54		
				50-3	69		
기정	-	B13	205	50-4	16		
기정	-			50-6	93		
기정	-			50-5	9		
기정	-			3-195	5		
변경	①			50-4	16	123	・획지계획(50-4 : 대지분할)
				50-6	93		
				50-5	9		
				3-195	5		
기정	-			51-4	82		
변경				51-4	82		
기정	-	B14	2,179	45-49	177		
변경				45-49	177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45-76	162		
변경				45-76	162		
기정	-			45-77	142		
변경				45-77	142		
기정	-			45-102	132		
변경				45-102	132		
기정	-			45-80	53		
기정	-			45-81	80		
변경	①			45-80	53	133	· 획지계획
				45-81	80		
기정	-			45-99	91		
기정	-			45-100	47		
변경	②			45-99	91	138	· 획지계획
				45-100	47		
기정	-			45-96	50		· 공동개발(규제) : 45-97, 45-98
기정	-			45-97	53		· 공동개발(규제) : 45-96, 45-98
기정	-			45-98	99		· 공동개발(규제) : 45-96, 45-97
변경	③			45-96	50	202	· 획지계획
				45-97	53		
				45-98	99		
기정	-			45-82	84		
기정	-			45-83	49		
변경	④			45-82	84	133	· 획지계획
				45-83	49		
기정	-			45-84	53		
기정	-			45-85	84		
변경	⑤			45-84	53	137	· 획지계획
				45-85	84		
기정	-			45-86	85		
기정	-			45-87	53		
변경	⑥			45-86	85	138	· 획지계획
				45-87	53		
기정	-			45-95	91		
변경				45-95	91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45-94	145		
변경				45-94	145		
기정	-			45-91	161		
변경				45-91	161		
기정	-			45-88	46		· 공동개발(권장) : 45-89
기정	-			45-89	95		· 공동개발(권장) : 45-88
변경	⑦			45-88	46	141	· 획지계획
				45-89	95		
기정	-			45-78	147		
변경				45-78	147		
기정	-	B15	868	45-74	162		
변경				45-74	162		
기정	-			45-73	73		
변경				45-73	73		
기정	-			45-124	79		
변경				45-124	79		
기정	-			45-70	268		
변경				45-70	268		
기정	-			45-67	50		· 공동개발(권장) : 45-68, 구45-69
기정	-			45-64	136		
변경	①			45-67	50	186	· 획지계획
				45-64	136		
기정	-			45-68	100		· 공동개발(규제):구45-69, · 공동개발(권장):45-67
변경				45-68	100		
기정	-	B16	275	45-61	53		
기정	-			45-62	93		
변경	①			45-61	53	146	· 획지계획
				45-62	93		
기정	-			45-60	129		
변경				45-60	129		
기정	-	B17	1,026	54-107	94		
기정	-			3-282	34		
변경	①			54-107	94	128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17-②
변경				3-282	34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54-103	106		
기정	-			54-106	83		
기정	-			54-132	12		
기정	-			3-14	78		
변경	②			54-103	106	279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17-①
				54-106	83		
				54-132	12		
				3-14	78		
기정	-			54-100	118		
기정	-			3-40	38		
변경	③			54-100	118	156	· 획지계획
				3-40	38		
기정	-			2-36	5		
기정	-			54-99	102		
기정				54-98	22		
변경	④			2-36	5	129	· 획지계획
				54-99	102		
				54-98	22		
기정	-			2-37	13		
기정	-			54-104	86		
변경	⑤			2-37	13	99	· 획지계획
				54-104	86		
기정	-			54-105	143		
변경				54-105	143		
기정	-			54-108	92		
변경				54-108	92		
기정	-	B18	3,272	2-20	165		
변경				2-20	165		
기정	-			2-19	139		
변경				2-19	139		
기정	-			2-18	142		
변경				2-18	142		
기정	-			2-17	135		
변경				2-17	135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2-16	185		
변경				2-16	185		
기정	-			2-15	83		
변경				2-15	83		
기정	-			54-11	93		
변경				54-11	93		
기정	-			54-12	99		
변경				54-12	99		
기정	-			54-13	83		
변경				54-13	83		
기정	-			54-15	145		
변경				54-15	145		
기정	-			54-16	188		
변경				54-16	188		
기정	-			54-35	109		
변경				54-35	109		
기정	-			54-33	138		
변경				54-33	138		
기정	-			54-32	66		
변경				54-32	66		· 공동개발(권장) : B18 (54-31)
기정	-			54-31	83		
변경				54-31	83		· 공동개발(권장) : B18 (54-32)
기정	-			54-30	73		
변경				54-30	73		· 공동개발(권장) : B18 (54-18)
기정	-			54-18	86		
변경				54-18	86		· 공동개발(권장) : B18 (54-30)
기정	-			54-19	109		
변경				54-19	109		
기정	-			54-23	73		
변경				54-23	73		· 공동개발(권장) : B18 (54-22)
기정	-			54-24	83		
변경				54-24	83		
기정	-			54-22	86		
변경				54-22	86		· 공동개발(권장) : B18 (54-23)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54-25	119		
변경				54-25	119		
기정	-			54-21	79		
변경				54-21	79		· 공동개발(권장) : B18 (54-36)
기정	-			54-36	89		
변경				54-36	89		· 공동개발(권장) : B18 (54-21)
기정	-			54-26	152		
변경				54-26	152		
기정	-			54-37	149		
변경				54-37	149		
기정	-			54-39	202		
변경				54-39	202		
기정	-			54-40	119		
변경				54-40	119		
기정	-	B19	798	45-115	170		
변경				45-115	170		
기정	-			52	79		
변경				52	79		
기정	-			45-116	149		
변경				45-116	149		
기정	-			45-55	183		
변경				45-55	183		
기정	-			45-56	112		· 공동개발(권장) : 45-57
변경				45-56	112		
기정	-			45-57	105		· 공동개발(권장) : 45-56
변경				45-57	105		
기정	-	B20	5,003	54-109	279		
변경				54-109	279		
기정	-			54-76	135		
변경				54-76	135		
기정	-			54-77	171		
변경				54-77	171		
기정	-			54-43	379		· 공동개발(권장) : 구53-1,구54-6,구54-41
변경				54-43	379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53-2	171		
변경				53-2	171		
기정	-			57-27	195		· 공동개발(권장) : 57-30
기정	-			57-28	7		
변경	①			57-27	195	202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20 (57-11)
				57-28	7		
기정	-			54-29	162		
기정	-			57-30	546		· 공동개발(권장) : 57-27
기정	-			57-25	16		
변경	②			54-29	162	724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20-③
				57-30	546		
				57-25	16		
기정	-			57-16	50		
기정	-			57-21	245		· 공동개발(권장) : 57-3, 57-22, 구57-31
기정	-			57-3	112		· 공동개발(권장) : 57-21, 57-22, 구57-31
기정	-			57-35	108		
변경	③			57-16	50	515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20-②
				57-21	245		
				57-3	112		
				57-35	108		
기정	-			57-5	162		
변경				57-5	162		
기정	-			57-22	147		· 공동개발(권장) : 57-3, 57-21, 구57-31
변경				57-22	147		
기정	-			57-11	1,265		
변경				57-11	1,265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B20-①
기정	-			57-9	277		
기정	-			57-15	66		
변경	④			57-9	277	343	· 획지계획
				57-15	66		
기정	-			58-1	241		· 공동개발(규제) : 58-2
기정	-			58-2	36		· 공동개발(규제) : 58-1
변경	⑤			58-1	241	277	· 획지계획
				58-2	36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58-3	169		· 공동개발(규제) : 58-4
기정	-			58-4	64		· 공동개발(규제) : 58-3
변경	⑥			58-3	169	233	· 획지계획
				58-4	64		
기정	-	B21	9,734	346-17	88		
변경				346-17	88		
기정	-			346-18	2,907		
변경				346-18	2,907		
기정	-			346-12	20		· 공동개발(규제) : 348
기정	-			348	26		· 공동개발(규제) : 346-12
기정	-			348-5	102		
변경	①			346-12	20	148	· 획지계획
				348	26		
				348-5	102		
기정	-			348-8	76		공동개발(권장) : 348-9
기정	-			348-9	185		공동개발(권장) : 348-8
변경	②			348-8	76	261	· 획지계획
				348-9	185		
기정	-			348-6	43		· 공동개발(규제) : 348-7
기정	-			348-7	79		· 공동개발(규제) : 348-6
변경	③			348-6	43	122	· 획지계획
				348-7	79		
기정	-			348-2	218		
기정	-			348-4	228		
변경	④			348-2	218	446	· 획지계획
				348-4	228		
기정	-			348-3	146		
변경				348-3	146		
기정	-			348-1	126		· 공동개발(규제) : 347-4
기정	-			347-4	175		· 공동개발(규제) : 348-1
변경	⑤			348-1	126	301	· 획지계획
				347-4	175		
기정	-			347-9	453		
변경				347-9	453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347-7	825		· 공동개발(권장) : 347-11
기정	-			347-11	112		· 공동개발(권장) : 347-7
기정	-			347-15	13		
변경	⑥			347-7	825	950	· 획지계획(346-1 : 대지분할)
				347-11	112		
				347-15	13		
기정	-			347-5	695		
변경				347-5	695		
기정	-			347-6	268		
변경				347-6	268		
기정	-			346	139		
변경				346	139		
기정	-			347-3	93		· 공동개발(규제) : 347-2,346-11,347-13,346-19
기정	-			347-13	7		· 공동개발(규제) : 347-2,347-3,346-11,346-19
기정	-			346-11	86		· 공동개발(규제) : 347-2,347-3,347-13,346-19
변경	⑦			347-3	93	186	· 획지계획
				347-13	7		
				346-11	86		
기정	-			347-1	30		· 공동개발(규제) : 346-10, 공동개발(권장):346-20
기정	-			347-2	50		· 공동개발(규제) : 347-3,347-13,346-11,346-19
기정	-			346-8	9		
기정	-			346-10	33		· 공동개발(규제) : 347-1, 공동개발(권장):346-20
기정	-			346-19	33		· 공동개발(규제) : 347-2,347-3,347-13,346-11
기정	-			346-20	159		· 공동개발(권장) : 347-1,346-10
변경	⑧			347-1	30	314	· 획지계획
				347-2	50		
				346-8	9		
				346-10	33		
				346-19	33		
				346-20	159		
기정	-			347	292		
변경				347	292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346-1	364		
변경				346-1	364		
기정	-			346-3	1,296		
변경				346-3	1,296		
기정	-			346-5	36		· 공동개발(규제) : 346-6,346-21 · 공동개발(권장) : 346-7
기정	-			346-6	83		· 공동개발(규제) : 346-5,346-21 · 공동개발(권장) : 346-7
기정	-			346-7	159		· 공동개발(권장) : 346-5,346-6,346-21
기정	-			346-21	80		· 공동개발(규제) : 346-5,346-6 · 공동개발(권장) : 346-7
변경	⑨			346-5	36	358	· 획지계획
				346-6	83		
				346-7	159		
				346-21	80		
기정	-	B22	460	346-15	113		
기정	-			346-16	50		
변경	①			346-15	113	163	· 획지계획
				346-16	50		
기정	-			346-13	89		
기정	-			346-14	142		
기정	-			346-29	66		
변경	②			346-13	89	297	· 획지계획
				346-14	142		
				346-29	66		
기정	-	C1	3,014	60-220	250		
변경				60-220	250		
기정	-			60-275	561		
변경				60-275	561		
기정	-			60-219	228		
변경				60-219	228		
기정	-			60-217	234		
기정	-			60-218	238		
변경	①			60-217	234	472	· 획지계획
				60-218	238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60-216	198		
변경				60-216	198		
기정	-			60-224	180		
변경				60-224	180		
기정	-			60-228	189		
기정	-			60-223	212		
변경	②			60-228	189	401	·획지계획
				60-223	212		
기정	-			60-222	212		
변경				60-222	212		
기정	-			60-221	211		
변경				60-221	211		
기정	-			60-229	139		
변경				60-229	139		
기정	-			60-227	162		
변경				60-227	162		
기정	-	C2	3,029	60-215	169		
변경				60-215	169		
기정	-			60-147	174		
변경				60-147	174		
기정	-			60-225	202		·공동개발(규제) : 구103-289
변경				60-225	202		
기정	-			60-145	796		
변경				60-145	796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2-①
기정	-			60-142	271		·공동개발(권장) : 60-143
기정	-			60-143	324		·공동개발(권장) : 60-142
변경	①			60-142	271	595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2 (60-145)
				60-143	324		
기정	-			60-141	152		·공동개발(권장) : 60-140
변경				60-141	152		
기정	-			60-139	165		
변경				60-139	165		
기정	-			60-138	159		
변경				60-138	159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60-136	169		· 공동개발(권장) : 60-137
변경				60-136	169		
기정	-			60-137	212		· 공동개발(권장) : 60-136
변경				60-137	212		
기정	-			60-140	229		· 공동개발(권장) : 60-141
기정	-			60-286	7		
변경	②			60-140	229	236	· 획지계획
				60-286	7		
기정	-	C3	2,087	60-129	149		
변경				60-129	149		
기정	-			60-125	443		
변경				60-125	443		
기정	-			60-122	159		
변경				60-122	159		
기정	-			60-121	119		
기정	-			103-137	7		
변경	①			60-121	119	126	· 획지계획
				103-137	7		
기정	-			103-3	112		
변경				103-3	112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3-②
기정	-			105-11	172		
변경				105-11	172		
기정	-			105-19	215		
변경				105-19	215		
기정	-			103-60	179		· 공동개발(권장) : 103-58
기정				103-58	73		· 공동개발(권장) : 103-60
변경	②			103-60	179	252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3 (103-3)
				103-58	73		
기정	-			60-198	185		
변경				60-198	185		
기정	-			60-127	142		
변경				60-127	142		
기정	-			60-128	132		
변경				60-128	132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C4	1,231	105-8	142		
변경				105-8	142		
기정	-			105-13	106		
변경				105-13	106		
기정	-			105-9	195		· 공동개발(규제) : 105-28
기정	-			105-28	43		· 공동개발(규제) : 105-9
변경	①			105-9	195	238	· 획지계획
				105-28	43		
기정	-			105-34	261		
변경				105-34	261		
기정	-			105-25	93		· 공동개발(권장) : 105-35
기정	-			105-35	79		· 공동개발(권장) : 105-25
변경	②			105-25	93	172	· 획지계획
				105-35	79		
기정	-			105-33	142		
변경				105-33	142		
기정	-			103-169	12		
기정	-			105-15	59		· 공동개발(권장) : 105-24
기정	-			105-24	99		· 공동개발(권장) : 105-15
변경	③			103-169	12	170	· 획지계획
				105-15	59		
				105-24	99		
기정	-	C5	3,879	103-55	83		· 공동개발(규제) : 103-54,103-30,105-36
기정	-			105-30	20		· 공동개발(규제) : 105-36,103-54,103-55
기정	-			105-31	24		
기정	-			105-36	3		· 공동개발(규제) : 105-30,103-54,103-55
기정	-			105-6	7		
변경	①			103-55	83	137	· 획지계획
				105-30	20		
				105-31	24		
				105-36	3		
				105-6	7		
기정	-			103-54	73		· 공동개발(규제) : 103-55,103-30,105-36
변경				103-54	73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103-46	224		
변경				103-46	224		
기정	-			64-57	117		
변경				64-57	117		
기정	-			103-49	130		
변경				103-49	130		
기정	-			64-58	385		
변경				64-58	385		
기정	-			64-45	90		
변경				64-45	90		
기정	-			64-24	56		
기정	-			64-23	69		
변경	②			64-24	56	125	· 획지계획
				64-23	69		
기정	-			64-21	63		
변경				64-21	63		· 공동개발(권장) : C5 (64-22)
기정	-			64-22	76		
변경				64-22	76		· 공동개발(권장) : C5 (64-21)
기정	-			64-12	46		
기정	-			64-11	99		
변경	③			64-12	46	145	· 획지계획
				64-11	99		
기정	-			64-10	69		
변경				64-10	69		· 공동개발(권장) : C5 (64-9)
기정	-			64-9	129		
변경				64-9	129		· 공동개발(권장) : C5 (64-10)
기정	-			103-18	112		
변경				103-18	112		
기정	-			103-16	216		
변경				103-16	216		
기정	-			103-15	102		
변경				103-15	102		
기정	-			103-14	102		
변경				103-14	102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103-13	94		
변경				103-13	94		
기정	-			103-12	98		
변경				103-12	98		
기정	-			103-11	97		
변경				103-11	97		
기정	-			103-10	108		
변경				103-10	108		
기정	-			103-37	212		
변경				103-37	212		
기정	-			103-36	197		
변경				103-36	197		
기정	-			103-35	149		
변경				103-35	149		
기정	-			62-72	13		
기정	-			103-4	109		
변경	④			62-72	13	122	· 획지계획
				103-4	109		
기정	-			62-11	172		
변경				62-11	172		
기정	-			62-10	60		
변경				62-10	60		· 공동개발(권장) : C5 (62-17)
기정	-			62-17	69		
변경				62-17	69		· 공동개발(권장) : C5 (62-10)
기정	-			62-9	60		
변경				62-9	60		· 공동개발(권장) : C5 (62-16)
기정	-			62-16	69		
변경				62-16	69		· 공동개발(권장) : C5 (62-9)
기정	-			62-8	42		
기정	-			62-15	35		
변경	⑤			62-8	42	77	· 획지계획
				62-15	35		
기정	-	C6	2,625	45-53	146		· 공동개발(규제) : 45-104
기정	-			45-104	159		· 공동개발(규제) : 45-53
변경	①			45-53	146	305	· 획지계획
				45-104	159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60-22	142		
변경				60-22	142		
기정	-			60-19	142		
변경				60-19	142		
기정	-			60-23	178		
변경				60-23	178		
기정	-			60-18	203		
변경				60-18	203		
기정	-			45-107	148		· 공동개발(규제) : 60-16
기정	-			60-16	228		· 공동개발(규제) : 45-107
변경	②			45-107	148	376	· 획지계획
				60-16	228		
기정	-			45-106	185		
변경				45-106	185		
기정	-			45-105	109		· 공동개발(규제) : 60-11,60-187
기정	-			60-11	26		· 공동개발(규제) : 45-105,60-187
기정	-			60-187	33		· 공동개발(규제) : 45-105,60-11
변경	③			45-105	109	168	· 획지계획
				60-11	26		
				60-187	33		
기정	-			45-52	137		
변경				45-52	137		
기정	-			60-10	364		
변경				60-10	364		
기정	-			60-13	254		
변경				60-13	254		
기정	-			60-17	171		
변경				60-17	171		
기정	-	C7	722	61-18	191		
변경				61-18	191		
기정	-			45-121	119		
변경				45-121	119		· 공동개발(권장) : C7 (60-190)
기정	-			60-190	92		· 공동개발(규제):구60-268,구45-119,구45-120
변경				60-190	92		· 공동개발(권장) : C7 (45-121)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7-①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60-9	7		
기정	-			60-284	16		
기정	-			61-3	39		
기정	-			62-54	20		
변경	①			60-9	7	82	·획지계획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7 (60-190, 61-2)
				60-284	16		
				61-3	39		
				62-54	20		
기정	-			61-2	73		
변경				61-2	73		·공동개발(권장) : C7 (61-5)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7-①
기정	-			61-5	89		·공동개발(규제) : 61-23(대지분할)
변경				61-5	89		·공동개발(권장) : C7 (61-2, 61-10)
기정	-			61-10	76		·공동개발(규제) : 61-23(대지분할)
변경				61-10	76		·공동개발(권장) : C7 (61-5)
기정	-	C8	651	61-4	45		·공동개발(규제) : 61-11(대지분할)
기정	-			61-11	20		·공동개발(규제) : 61-4
기정	-			61-7	7		
변경	①			61-4	45	72	·획지계획(61-11 : 대지분할)
				61-11	20		
				61-7	7		
기정	-			61-6	96		
기정	-			61-11	26		·공동개발(규제) : 61-4
변경	②			61-6	96	122	·획지계획(61-11 : 대지분할)
				61-11	26		
기정	-			62-1	139		
변경				62-1	139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8-③
기정	-			62-3	36		
기정	-			62-4	112		·공동개발(규제) : 구62-12
변경	③			62-3	36	148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8 (62-1)
				62-4	112		
기정	-			62-5	14		·공동개발(규제) : 62-6
기정	-			62-6	99		·공동개발(규제) : 62-5
기정	-			62-7	8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62-14	13		
기정	-			62-51	36		
변경	④			62-5	14	170	· 획지계획
				62-6	99		
				62-7	8		
				62-14	13		
				62-51	36		
기정	-	C9	1,646	76-7	56		· 공동개발(규제) : 76-11,76-12(대지분할)
기정	-			76-11	57		· 공동개발(규제) : 76-7,76-12(대지분할)
기정	-			76-12	20		· 공동개발(규제) : 76-7,76-11
변경	①			76-7	56	133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9-②
				76-11	57		
				76-12	20		
기정	-			76-5	164		
변경				76-5	164		
기정	-			76-2	30		· 공동개발(규제) : 76-17
기정	-			76-4	155		· 공동개발(규제) : 76-14
기정	-			76-10	46		· 공동개발(규제) : 76-12(대지분할),구76-18
기정	-			76-14	31		· 공동개발(규제) : 76-4
기정	-			76-17	9		· 공동개발(규제) : 76-2
변경	②			76-2	30	271	· 획지계획 & 대지교환권장선지정 : C9-①
				76-4	155		
				76-10	46		
				76-14	31		
				76-17	9		
기정	-			76-1	183		· 공동개발(권장) : 76-8,76-15
기정	-			76-3	25		
기정	-			76-8	125		· 공동개발(권장) : 76-1,76-15
기정	-			76-15	40		· 공동개발(권장) : 76-1,76-8
변경	③			76-1	183	373	· 획지계획
				76-3	25		
				76-8	125		
				76-15	40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75-1	326		
변경				75-1	326		
기정	-			75	379		
변경				75	379		
기정	-	C10	2,381	77-13	155		
변경				77-13	155		· 77-13 : 대지분할
기정	-			77-11	50		
기정	-			77-12	109		
기정	-			77-14	19		
변경	①			77-11	50	178	· 획지계획(77-14 : 대지분할)
				77-12	109		
				77-14	19		
기정	-			77-4	363		
변경				77-4	363		· 공동개발(권장) : C10 (77-8)
기정	-			80-1	112		
기정	-			81	224		
변경	②			80-1	112	336	· 획지계획
				81	224		
기정	-			77-8	195		
변경				77-8	195		· 공동개발(권장) : C10 (77-4)
기정	-			77-40	606		
변경				77-40	606		
기정	-			77-7	485		
기정	-			77-41	63		
변경	③			77-7	485	548	· 획지계획(77-7, 77-41 : 대지분할)
				77-41	63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불허/권장용도)

□ 기정

구분	도면표시	전층		1층전면
불허용도	A (CB-1,CB-2, PD-3, PD-4, PD-5)	-		• 입면처리 불량업종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자재, 알류미늄샷시, 차량정비업소, 광고물제작업, 철재상 등 보행방해용도 및 관련 용도)
권장용도[1]	B (CB-1, PD-3, PD-4, PD-5)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연면적 300㎡미만의 공연장 • 서점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연면적 합계1,0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00㎡이상의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등)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교육연구 및 집회시설	• 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 제외) • 연구소, 도서관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연면적 500㎡ 이상인 시설 (단,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주 1) 건물전체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5%이상 층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당해 층면적의 5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 변경

구분	도면표시	전층	1층
불허용도	간선변 (A)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해당하는 획지에 한함)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단 환경개선사업구역은 복합용도도 불허)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금속가공 및 제작, 기계수리, 제조업, 창고시설, 고물상, 폐기물 및 차량수리 및 제작, 정비, 세차, 폐차, 타이어 및 밧데리등 관련소매점, 건축자재, 목공소, 난방수도, 광고물제작업, 페인트 등과 관련된 업종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단 환경개선사업구역은 주차장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

구분	도면표시	전층	1층
불허용도	이면부 (B)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
권장용도[1]	간선변 (a)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제과점(환경개선사업구역에 한함) •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환경개선사업구역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이면부 (b)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주1)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 1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일반상업지역	50% 이하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50% 이하	

주)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2) 용적률 계획

위치		기 정		변 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간선변	-	-	200%	250%	-	
	이면부			200%	230%	-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800%	600%	800%	-	

주1) 이문로변(GC)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될 경우 간선변에 적용되는 용적률 적용

3) 높이계획

위 치		기정	변경주)	비고
간선변	이문로변	· 최고 : 50m이하 (15층이하) · 최저 : 3층	· 기준높이 : 50m이하 / 최고높이 : 60m이하	
	회기로변	· 최고 : 사선제한 1:1.5D이하 · 최저 : 3층	· 기준높이 : - / 최고높이 : 40m이하	
	경희대길변	· 최고 : 사선제한 1:1.5D이하	· 기준높이 : - / 최고높이 : 30m이하	환경개선 사업구역
이면부		· 최고 : 사선제한 1:1.5D이하	· 기준높이 : - / 최고높이 : 20m이하	
특별계획구역		· 최고 : 30m이하(10층이하)	· 기준높이 : - / 최고높이 : 50m이하	릇교회 및 주변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선제한배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GR1	회기로변 대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 이하
			허용용적률	250% 이하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40m 이하
GR2	이면부 대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 이하
			허용용적률	230% 이하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20m 이하
GR3	환경개선사업구역 대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 이하
			허용용적률	250% 이하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30m 이하
GC	이문로변 대지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600% 이하
			허용용적률	800% 이하
		높이	기준높이	50m
			최고높이	60m 이하

주)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준용.

다. 건축물 건축선 · 배치 · 형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이문로변 : 3m · 회기로, 경희대길변 : 1m · 이면도로변 - 도로중심선에서 : 2~4m	· 이문로변 : 3m · 회기로변 : 1~2m · 경희대길변 : 2~8m · 이면도로변 - 폭원일정도로변 : 1m - 폭원불규칙도로변: 중심선에서 2~4m - 보행자우선도로변 : 1m	결정도 참조
	조건부 건축한계선	· 공동건축권장 / 자율적 공동건축 수용시 - 건축한계선 2m	· 폐지	결정도 참조
	벽면한계선	· 휘경시장 주변 2m	· 좌동(변경없음)	결정도 참조
		· 계획적 개발구역(PD2) : 2m	· 폐지	
		· 회기로 남측이면부 : 5m	· 회기로 및 남측이면부 : 2~4m	
		· 경희대 정문 앞 : 2m	· 좌동(변경없음)	
형태	고층 탑상형 건축물	· 10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6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50%이하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지붕형태	-	· 신설 - 경사형 지붕 권장 - 지붕 구배 : 4/10 이상 7/10 이하	환경개선 사업구역
	1층부 형태	· 1층바닥높이 - 접한 도로 및a보도와 단차 1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축 건축물의 1층 높이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 및 특화거리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 및 특화거리로 1층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20m이상 도로변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12m 이상 도로변의 1층 설치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이문로변 : 3m · 회기로, 경희대길변 : 1m · 이면도로변 - 도로중심선에서 : 2~4m	· 이문로변 : 3m · 회기로변 : 1~2m · 경희대길변 : 2~8m · 이면도로변 - 폭원일정도로변 : 1m - 폭원불규칙도로변 : 도로 중심선에서 2~4m거리의 획지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보행자우선도로변 : 1m	전구역내 도로변
	공개 공지	-	· 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함 · 설치형태 : 쌈지공원 형태 · 전면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대상형 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 제121조에 의한 기준 적용 (계획적개발구역) · 개소 : 4개소	· 서울시 건축조례 제121조 제1항의 "식재 등 조경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함 · 최소폭원 3m이상 · 개소 : 1개소	이문로변
	쌈지형 공지	· 최소 45㎡이상 (계획적개발구역) · 개소 : 4개소	· 최소 25㎡이상 ·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5m이상 [피로티 구조(유효높이 6m이상)가능] · 개소 : 4개소	이문로변 특별계획구역
	대지안 조경	-	· 서울시 건축조례 제120조의 규정 준용	
	공공보행 통로	· 보행연계성 확보 필요 대지 : 2~4m(벽면한계선1~4m) · 개소 : 5개소	· 지침도상 지정위치와 폭원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 통행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 · 개소 : 3개소	이문로변 이면부
	공공 공지	· 녹지형 공공공지 6개소 · 도로형 공공공지 4개소	· 녹지형 공공공지 1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 그 외 공공공지 모두 폐지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 간선도로변 일부구간 · 경희대길에 접한 대지	
주차출입 허용구간	· PD-5(계획적 개발구역) 이면도로변 지정	· 폐지	
공동주차출입구	· 인접대지간 공동조성 · 최소폭원 6m이상	· 좌동(변경없음)	회기로변, 이문로변
공동주차통로	-	· 폭원 : 6m · 개소 : 2개	회기로변
주차타워	· 릇교회 하단 1개소	· 폐지	
보행자우선도로	· 건축한계선 4m(도로중심선기준 양측 2m) · 시간제 서비스차량진입을 부분적으로 허용 (보행활성화된 이면도로구간) · 개소 : 9개	· 건축한계선 1m · 개소 : 8개	이면부

□ 주차장설치기준의 면제 및 감면 (환경개선사업구역)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주차장설치 기준 완화	-	· 분전반 수용시 - 주차장법 제19조3항의 주차장설치기준의 100% 완화 ※ 인접한 2개 획지 공동 수용시 : 각각 50% 완화 · 분전반 미수용시 -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주차장설치비용의 1/2을 납입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	환경개선 사업구역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외관정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조례」 제6조 및 제21조의 사항에 의거 시행 및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함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서울시고시2004-158호)" 기준을 준수하고, 추가로 다음 각호의 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간판개수는 업소당 2개이하로 제한 2. 점멸등 및 원색의 네온사인 금지	전구역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광고물의 설치위치, 종류 등 광고물 설치계획에 대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2조 1항 2호의 서류 및 도면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입면계획도에 광고물의 위치, 종류에 대해 표시된 도면을 함께 제시	·좌동(변경없음)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는 동일 내 점포주들간의 협의를 통해 광고물의 종류, 설치위치에 따른 하단선, 상단선, 돌출경계선 등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함	·좌동(변경없음)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계획이 제시된 경우 허가관련부서는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 계획반영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좌동(변경없음)	
		-	·별표 1 환경개선사업구역 옥외광고물에 관한 결정조서를 반영하여야 함	환경개선사업구역
외관정비	건축물 외관	-	·의장, 재료, 색채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경희대앞 환경개선사업구역'은 다음 각호의 항을 준수하여야 함 1. 1층은 소규모 점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1층 점포의 입면 폭은 9m이하로 할 것을 권장 2. 건축물 외관은 환경정비사업 및 대학가 특성에 어울리도록 계획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함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전구역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름	전구역
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 설치	전구역
개방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기준에 따라 설치	간선변
야간경관조명	·간선도로변 10층이상 건물 신축시	·간선도로변 건축물 신축 또는 재건축시 ·옥외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에 설치	간선도로변 및 환경개선 사업구역
	-	·옥외광고물 조명은 스포트 조명은 불가하며 간접방식으로 설치하며 조명의 색채는 백색으로 하여야함	환경개선 사업구역

[별표 1] : 환경개선사업구역 옥외광고물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위치	비고
		기정	변경		
가로형 간판	수량	-	·업소별 1개(도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형태	-	·1 층부 : 판류 또는 입체형 ·2, 3층 : 입체형만 가능 ·4층 이상 : 간판설치 금지 ·최고층 : 기호 및 건축물명을 입체형으로만 (가로형태) 가능		
	크기	-	·세로 : 0.8m이하(2개이상의 간판나열시 세로길이 동일의무) 또는 층과 층사이 4/5이하(2개이상 간판 나열시 세로길이 동일 의무) ·가로 : 업소의 가로폭 범위이하 (전체적으로 건물 폭 이하) ·두께 : 최대 0.3m 이하 (2개이상 간판 나열시 두께 동일 의무)		
	색상	-	·색조통일을 위해 바탕은 명도, 채도가 낮은 것을 채택 ·주변 간판과 재료 및 환경 조화를 이룰 것을 권장		
	기타	-	·문자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간판의 50% 이내 (픽토그램은 문자에서 제외)		
돌출형 간판 (연립형)	수량	-	·1동의 건물(부속물제외)에 한측에 1개 설치 단, 건물 전면폭이 20m를 초과할 경우 2개설치 가능		
	크기	-	·세로 : 지상부에서 3m이상 이격, 높이 20m이내로 건축물 중앙부에는 설치금지 ·가로 : 건축물의 벽면으로부터 0.8m 이내 (동일건물 내 돌출끝선 일치) ·두께 : 0.5m 이내(앞, 뒷면에만 표시) ·1개 간판은 1개층고 혹은 3m를 넘길 수 없음		
	기타	-	·대지내 통로부분 돌출간판 금지 ·연립형 돌출형 간판의 색상은 건물별로 통일		
돌출형 간판 (1층부)	수량 크기	-	·업소별 1개 (0.36㎡) ·두께 : 0.2m 이하 ·간판끝선 : 벽면에서 0.6m 이하		
	기타	-	·점포의 정면, 좌측 상부 설치 (1층 돌출형간판 설치시 연립형 돌출간판 표시 금지) ·점포의 업종, 상품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기 쉽도록 디자인 ·네온관 직접노출 금지		
·환경개선사업구역에 한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옥외광고물 설치비 지원 (가로형 간판 1개-단, 곡각부는 2개-에 한하여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가능) ·조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포트 조명은 불가하며 간접방식으로 설치 (조명 백색) ·창문부착 광고물 및 현수막은 건축물의 외벽면, 창문 등 가로에서 보이는 장소 및 가로 전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지주광고물, 가로시설물을 이용한 부착광고물 등의 설치를 금함 ·간판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시행은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함 ·동일 건물 내 간판은 가로간판의 세로길이, 돌출형간판의 끝선, 두께등이 동일해야 함 ·점멸등 및 원색의 네온사인은 금지 ·지상으로부터 6m이내(1층 층고이상)에는 건물내 업종을 나타내는 픽토그램 설치를 권장(본 항목에 한해 권장사항임) ·그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준용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PD-1	회기동 50-6대 일원	449 (497)	47-3대 49-6대 50-2대 50-3대 50-4대 50-5대 50-6대 51-2전 51-3대 51-4대 3-195대 49-2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전 대 대 대 대	9 53 63 57 21 7 106 68 23 83 6 1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부정형 필지해소 및 동일소유자 필지 등합리적 공동개발을 모색토록 계획적 개발구역으로 지정
폐지	-	〃	449 (497)	〃	〃	〃	·일단의 공동개발의 합의 도출 어려움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구역 폐지
기정	PD-2	회기동 57-11대 일원	2,377 (2,400)	57-9대 57-11대 57-15대 57-25대 57-27대 57-28대 57-30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277 1,293 66 16 195 7 546	·공장용도의 대규모 필지에 대한 환경개선마련 및 대규모 개발가능지로서의 공공시설 적극 확충을 위하여 계획적개발구역 지정
폐지	-	〃	2,377 (2,400)	〃	〃	〃	·일단의 공동개발의 합의 도출 어려움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구역 폐지
기정	PD-3	회기동 346-18대 일원	3,398 (3,449)	346-17대 346-18대	대 대	119 3,330	·낙후된 시장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 및 공공성의 적극적확보(공공보행통로, 대상형공지 등)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구역지정
폐지	-	〃	3,398 (3,449)	〃	〃	〃	·시장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달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계획적개발구역 폐지

주) ( )안의 면적은 토지대장상의 면적 및 수치지도상의 구적면적임

구분	도면 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PD-4	회기동 60-39번지 일대	1,620 (1,636)	45-54대 60-4대 60-6대 60-24대 45-111대 60-26대 60-27대 60-28대 60-31대 60-38대 60-39대 60-175대 60-30도 60-181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도 도	66 2 182 60 59 60 26 10 189 7 936 3 23 13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의 적극적 확보 ·영세필지, 대형필지의 토지이용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적개발구역으로 지정
변경	-	〃	2,012	45-54대 45-111대 45-112도 60-4대 60-6대 60-24대 60-26대 60-27대 60-30도 60-31대 60-35도 60-38도 60-39대 60-175대 60-181도 60-285도	대 대 도 대 대 대 대 대 도 대 도 도 대 대 도 도	66 59 2 2 182 60 60 26 23 185 2 7 936 3 13 386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의 적극적 확보 ·영세필지, 대형필지 및 도시계획도로결정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기정	PD-5	회기동 77-7 대 일원	1,876 (2,046)	77-4대 (80-1대 80-2대 80-3대 77-10대) 77-7대 77-8대 77-40대 77-41대 81-0대	대 대 대 대 대 대	363 (합필) 518 195 606 106 258	·개발가능한 필지 다수분포로 개발가능성 증대에 따른 계획적개발구역 지정
폐지	-	〃	1,876 (2,046)	〃	〃	〃	·일단의 공동개발의 합의 도출 어려움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구역 폐지

주) ( )안의 면적은 토지대장상의 면적 및 수치지도상의 구적면적임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회기동 60-39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2,012㎡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시설계획			• 국공유지가 포함된 면적만큼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의 표기된 위치에 우선적으로 공공시설(공원,공지,도로) 조성후 기부채납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 a	
	건폐율		• 50%	
	용적률	기준	• 200%	
		허용	• 250%	
	건축물높이(m)		• 최고 50m이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 2m(공공시설(도로)가 기부채납되는 부분은 그 경계로부터 적용) • 이면부 : 1m	
형태			• 고층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부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기타에관한 사항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2m), 차도형 전면공지(1m)	
	쌈지형공지		• 계획구역내 1개소	

주)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기정 : 일반상업지역에만 해당

내용 / 항목	규제	권장	산 정 방 식
공동건축 규제	○		• 20%
건축한계선	○		• (조성면적÷대지면적)X기준용적률X1.1
공개공지	○		• [{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X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의한 용적률
대상형공지	○		• (조성면적÷대지면적)X기준용적률X1.8
공공보행통로	○		• (조성면적÷대지면적)X기준용적률X1.2
권장용도 (1종이상 연면적 5%이상)		○	• (조성연면적÷총연면적)X기준용적률X2.0
조건부 건축한계선(폭2m이상)		○	• (조성면적÷대지면적)X기준용적률X2.0
쌈지형공지 또는 공지의 조성		○	• (조성면적÷대지면적)X기준용적률X1.8

□ 변경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0.1 • 3필지이상 α=0.15 • 4필지이상 α=0.2 (동일소유자는 1필지로 계산)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0.2 • 3필지이상 α=0.25
대지분할/대지교환	-		준수시	기준용적률×0.2	• 단, 국공유지 소유의 현황도로 분할은 제외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연면적)×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1층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1층 바닥면적)×0.1	• 1층바닥면적(주차장제외)의 50% 이상시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 건축조례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대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 건축조례상 대지안의 조경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환경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	• 서울시 보급형옥상녹화기준 준수시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신·재생에너지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시설비 투자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건축물 시공전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한 경우
개방화장실	-		준수시	기준용적률×0.03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을 제공한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비율

주) 전층권장용도와 1층권장용도는 중복적용 불가

나.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준높이 완화	-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1) -기준높이×(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 • 지하공간연결통로 설치시 -기준높이×(지하공간연결통로의 면적×1.5/대지면적) • 저층부(5층, 20m이하) 건폐율 40%이하 조성시 -기준높이×0.1 • 완화차선 조성시 -기준높이×0.1 • 개방화장실 설치시 -기준높이×0.1	
최고높이2) 완화	-	• 기부채납 -기준높이 또는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주 1)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을 전부 포함한다.
2)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Ⅳ.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대지 분할에 의한 획지계획 변경시는 제외)
2. 공개공지·쌈지형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Ⅴ. 관련 도면 : 별첨(생략)

Ⅵ.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희대앞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Ⅶ.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3707-8298)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94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69호(1994. 5.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 제1994-36호(1994. 8. 4)로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고 제2007-587호(2007. 9. 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선사로～고덕지구간(고덕뒷길) 도로확장공사(3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암사동 214-4～강동구 고덕동 137간
- 금회(3차)사업시행지 : 강동구 암사동 342～고덕동 484번지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선사로~고덕지구간(고덕뒷길) 도로확장공사(3차)

다. 사업의 규모 : 폭 8~10→25m,
연장 1,30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아.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시 도로계획과(☎3707-8144) 및 강동구 도로과(☎02) 480-1405)에 관련도서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선사로~고덕지구간(고덕뒷길)도로확장공사(3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암사동 342	138	138	답		서성월	강동구 천호동 317-12	-	-	-	
2	암사동 345	496	440	답		이태식	강동구 천호동 22-8				
3	암사동 342-3	89	89	답		강태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84-1 2층 202호	이은순	강동구 암사동 445-31 신흥빌리지 B-301	근저당	
4	암사동 346	146	146	답		맹미숙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154 신일(아)104-1002				
5	암사동 347	117	117	답		양고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144-42 무림(아)509호				
6	암사동 산 39-1	14,380	1,369	임	10560/1320	송명숙	경기 평택시 죽배동 산5-1				
					10560/1320	백운상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아) A동 4301				
					10560/1320	백운일	강동구 성내동452-2 진도파크뷰맨션 1701호				
					10560/1320	백운택	강남구 도곡동 467-24 우성캐릭터199 1동 2005호				
					192/24	전옥자	용산구 원효로4가 178 강변삼성스위트 102동 1901호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6	암사동 산 39-1	14,380	1,369	임	192/4	김동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124-1901				
					192/4	김동숙	용산구 이촌동430 LG한강자이(아) 106동1002호				
					192/4	김동옥	서초구 서초동1336 우성(아)1-1005				
					192/4	김동주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217-301				
					192/16	김동익	용산구 원효로4가 178 강변삼성스위트 102동 1901호				
					192/9	문동진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 7-505				
					192/9	김철희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 7-505				
					192/6	김유경	강남구 삼성동11 롯데캐슬프레미어 105동 1603				
					192/16	김동훈	경기 김포시 풍무동 598-8 당곡마을 111-1403	김동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124-1	근저당	
								김동숙	용산구 이촌동430 LG한강자이(아) 106동1002호	근저당	
								김동옥	서초구 서초동1336 우성(아)1-1005	근저당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6	암사동 산 39-1	14,380	1,369	임				김동주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 217-301	근저당	
								김동익	용산구 원효로4가 178 강변삼성스위트 102동 1901호	근저당	
7	암사동 336-1	1,488	6	전	10560/4280+1056/1000	백재흠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아)비동 2603호				
					192/24	전옥자	용산구 원효로4가 178 강변삼성스위트 102동 1901호				
					192/4	김동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124-1901				
					192/4	김동숙	용산구 이촌동430 LG한강자이(아) 106동1002호				
					192/4	김동옥	서초구 서초동1336 우성(아)1-1005				
					192/4	김동주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217-301				
					192/16	김동익	용산구 원효로4가 178 강변삼성스위트 102동 1901호				
					192/9	문동진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505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7	암사동 336-1	1,488	6	전	192/9	김철희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505				
					192/6	김유경	강남구 삼성동11 롯데캐슬프레미어 105동 1603				
					192/16	김동훈	경기 김포시 품무동 598-8 당곡마을 111-1403	김동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124-1	근저당	
								김동숙	용산구 이촌동430 LG한강자이(아) 106동1002호	근저당	
								김동옥	서초구 서초동1336 우성(아)1-1005	근저당	
								김동주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217-301	근저당	
								김동익	용산구 원효로4가 178 강변삼성스위트 102동 1901호	근저당	
8	암사동 348-1	1,364	382	전	10560/4280+ 10560/1000	백재흠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아)비동 2603호				
					192/24	전옥자	용산구 원효로4가 178 강변삼성스위트 102동 1901호				
					192/4	김동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124-1901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8	암사동 348-1	1,364	382	전	192/4	김동숙	용산구 이촌동430 LG한강자이(아) 106동1002호				
					192/4	김동옥	서초구 서초동1336 우성(아)1-1005				
					192/4	김동주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217-301				
					192/16	김동익	용산구 원효로4가 178 강변삼성스위트 102동 1901호				
					192/9	문동진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505				
					192/9	김철희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505				
					192/6	김유경	강남구 삼성동11 롯데캐슬프레미어 105동 1603				
					192/16	김동훈	경기 김포시 품무동 598-8 당곡마을 111-1403	김동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124-1	근저당	
								김동숙	용산구 이촌동430 LG한강자이(아) 106동1002호	근저당	
								김동옥	서초구 서초동1336 우성(아)1-1005	근저당	
								김동주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217-301	근저당	
								김동익	용산구 원효로4가 178 강변삼성스위트 102동 1901호	근저당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9	암사동 산 40-3	27,925	209	임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중구 을지로2가 148-10				
10	암사동 360	2,269	430	답		김인수	강동구 천호동 31-6	서울축산업 협동조합	강서구 등촌동 631-6	근저당권 및 지상권	
11	암사동 361	42	42	전		유쾌하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 3동 804				
12	암사동 산 41-1	7,809	2,236	임		김형락	마포구 마포동 35				
13	고덕동 산 99-1	10,554	2,294	임		전주최씨결성 공파종중	강동구 고덕동 644	-	-	-	
14	고덕동 산 99-3	830	69	임		김진수	강동구 고덕동 594-2				
15	고덕동 604-1	36	36	대		이영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749 코오롱레이크폴리스Ⅱ A동 311호				
16	고덕동 598	246	142	전		이영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749 코오롱레이크폴리스Ⅱ A동 311호				
17	고덕동 599-4	91	91	대		이영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749 코오롱레이크폴리스Ⅱ A동 311호				
18	고덕동 599-3	1,275	497	전		석경환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74-1101	중소기업 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9	고덕동 600	803	373	답		이영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749 코오롱레이크폴리스II A동 311호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일산호수지점)	근저당 및 지상권	
20	고덕동 601-1	142	142	답		최종철	강동구 명일동312-165 우성(아)103-501호				
21	고덕동 586-1	605	36	답		이영자	강동구 암사동445-8 신흥빌리지 A동 301호				
22	고덕동 611-5	190	155	답		배치달	강동구 상일동 173 삼성빌라 8동 302호				
23	고덕동 산 89-1	1,236	863	임	3/14	신길순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25				
					2/14	신재순	양천구 목동961-1 목동현대하이페리온2 202동 801호				
					3/14	홍기선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25				
					2/14	신은순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704동 1006호				
					1/14	신인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500-5 다정한마을2120동 1002				
					1/14	신순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1266 밤가시마을 709동 103호				
					2/14	조준형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210-606				
24	고덕동 산 88	7,844	1,466	임	(11/187) ×1/2	이범수	마포구 아현동 380-125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24	고덕동 산 88	7,844	1,466	임	(22/187) ×1/2	이범순	관악구 봉천동 957-10				
					(8/187) ×1/2	이범자	중랑구 묵동 237-69				
					(12/187) ×1/2	어수애	동대문구 전농동 270-9				
					(8/187) ×1/2	이미자	동대문구 전농동 270-9				
					(8/187) ×1/2	이미종	동대문구 전농동 270-9				
					(8/187) ×1/2	이순종	동대문구 전농동 270-9				
					(8/187) ×1/2	이종석	동대문구 전농동 270-9				
					(27/187)	한명희	송파구 송파동 130-7				
					(6/187)	이하종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865 달빛마을307-1401				
					1/2	전주이씨광평대군임정부정파관공소종회	강동구 고덕동 638-2				
25	고덕동 564-2	610	4	답		노승남	관악구 신림동 1735 관악산휴먼시아 225동 1203호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26	고덕동 563	1,588	1,148	전		김순옥	강동구 상일동 187 주공아파트 711-202	서울경기 양돈축산업 협동조합	강동구 천호동 292	근저당권	
								서울경기 양돈축산업 협동조합	강동구 천호동 292	지상권	
								박순국	강서구 화곡동 1145 우장산롯데낙천대아파트205-1602	근저당권	
								윤승기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현대타운 129-501	근저당권	
27	고덕동 562-2	56	56	대		김순옥	강동구 상일동 187 주공아파트 711-202	서울경기 양돈축산업 협동조합	강동구 천호동 292	근저당권	
								서울경기 양돈축산업 협동조합	강동구 천호동 292	지상권	
								박순국	강서구 화곡동 1145 우장산롯데낙천대아파트205-1602	근저당권	
								윤승기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현대타운 129-501	근저당권	
28	고덕동 564-5	282	282	임	7/15	어황호	경기 김포시 감정동 517-1				
					2/15	어황해	구로구 구로동 447-11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28	고덕동 564-5	282	282	임	2/15	어계숙	광진구 능동 245-2				
					2/15	어화숙	구로구 구로동 429-21 202호				
					2/15	어연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3-1 보륭연립2차 5-304				
29	고덕동 564-4	3,014	658	임		건설교통국					
30	고덕동 564-3	19,912	7	임	7/15	어황호	경기 김포시 감정동 517-1				
					2/15	어황해	구로구 구로동 447-11				
					2/15	어계숙	광진구 능동 245-2				
					2/15	어화숙	구로구 구로동 429-21 202호				
					2/15	어연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3-1 보륭연립2차 5-304				
31	고덕동 산 86	7,296	2,900	임		함종어씨문정공파종친회	강동구 성내동 429-3				
32	고덕동 476-6	378	86	도로		서울특별시					
33	고덕동 483	257	231	전		심상환	강동구 고덕동 482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101-1 (길동지점)	근저당및 지상권	
34	고덕동 484	2,588	1,033	전		김영수	서초구 방배동 799-6 레베빌 601호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선사로~고덕지구간(고덕뒷길)도로확장공사(3차구간)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암사동 345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7		이태식	강동구 천호동 2-1				
2	암사동 산40-3	휀스	능형망	H≒1.9m L =40m		사회복지법인영락사회복지재단	중구 을지로2가 148-10				
3	암사동 360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180		유용운	강동구 암사동 451-1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87							
		관정		1개							
4	암사동 산41-1	분묘		1기		미상					
5	고덕동 611-5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89		배치달	강동구 상일동 173 삼성빌라 8동 302호				
6	고덕동 산 89-1	비닐하우스	파이프	73	3/14	신길순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25				
					2/14	신재순	양천구 목동961-1 목동현대하이페리온2 202동 801호				
					3/14	홍기선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25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6	고덕동 산 89-1	비닐하우스	파이프	73	2/14	신은순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704동 1006호				
					1/14	신인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500-5 다정한마을2120동 1002				
					1/14	신순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66 밤가시마을 709동 103호				
					2/14	조준형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210-606				
		분묘	쌍묘	1기		이범덕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8 부영(아) 115-601				
7	고덕동 산 88	분묘		3기		이원종	송파구 송파동 130-7				
8	고덕동 563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2		김순옥	강동구 상일동 187 주공아파트 711-202	서울경기 양돈축산업 협동조합	강동구 천호동 292	근저당권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14				서울경기 양돈축산업 협동조합	강동구 천호동 292	지상권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70				박순국	강서구 화곡동 1145 우장산롯데낙천대아파트 205-1602	근저당권	
								윤승기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현대타운 129-501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9	고덕동 산86	콘테이너	콘테이너	19		고덕1동자율 방범대장	강동구 고덕동 486 아남(아)8-804				
10	고덕동 483	건물	기와/ 벽돌	99		심상환	강동구 고덕동 482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101-1 (길동지점)	근저당및 지상권	
		간판	목재	1개							
		간판	파이프	1개							
11	고덕동 484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129		김현자	강동구 고덕동 472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161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128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61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9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내용 정정

『봉은사 영산전 신중도』의 문화재 지정내용 정정사항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정사항

정정 대상 문화재	정정 내용(지정번호)		비고
	정정 前	정정 後	
『봉은사 영산전 신중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37호 『봉은사 영산전 신중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39호 『봉은사 영산전 신중도』	기타 고시 내용은 동일함

2. 정정사유 - 서울시 문화재 자료 제37호 『마포 최사영 고택』과 지정번호 중복
3. 변경일자 - 2007. 10. 4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7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 및 행정처분 사전에 의견제출 기한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정지

연번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1	200149	㈜썸넷	양현모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16 원우빌딩 6층	자본금미달 (조합탈퇴)	영업정지 1월
2	112268	㈜명안전설	전명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14 동아빌딩 505호	지연신고(기술자) 및 자본금 미달(조합탈퇴)	과태료 90만원 및 영업정지1월
3	200555	㈜이노시스 정보기술	김완태	서울 서초구 방배3동 537-6 해외빌딩 1층	기술능력부족 (기술3,기능1)	영업정지 1월
4	113374	이스트썬 테크놀로지(주)	정동익	서울 중랑구 면목1동 543-52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5	113392	(주)에스오에이 텔레콤	장형철	서울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4층 409, 410호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6	113397	(주)노아 테크놀로지	장재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타 22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7	113398	진흥통신전기(주)	박현봉	서울 송파구 문정동 20-11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8	113411	인디네트워크(주)	김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6-39 2층 기술자 없음 영지2 기술자무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9	113421	사이버 씨브이에스(주)	김경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10	113450	우진정보기술	차충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19-4 에이커맨드 307호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11	113466	(주)인트라비스	유승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7 세실II빌딩 702호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12	200002	한국씨씨티브이 유지관리㈜	이화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4 엘지에클라트 11층 1104호	기준미달 (기술자)	영업정지 1월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동법시행규칙 제12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동법 제78조(과태료) 제1항 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2항, 동법 제15조(등록기준) 동법시행령 제16조(등록의 기준), 동법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3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의견서 제출
   ○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 : 정보통신담당관, 담당자 : 박영재 전자우편 yjpark1@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3동 (☎ 02)6360-4993, FAX 02-3707-9029)
   ○ 의견서 제출기한 : 2007.10. 29(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2-6360-4993, 박영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77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번호 : 제2007 -161호
2. 허가년월일 : 2007년 9월 21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국제여성한문서법학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경남쇼핑 2-3
5. 대 표 자 : 심 재 영
6. 설립목적 : 한문서법의 발전과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의 서법연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등록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사자				처분사유	비고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113046	㈜네오로드	윤용점	강남구 역삼동 730-3 프라임빌딩 2층	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회	등록취소
112969	㈜포젠포스	김철호	강남구 도곡동 422-4	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회	등록취소
113091	㈜솔다정보기술	정운철	동대문구 장안동 416-10 삼우빌딩 지하층1호	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회	등록취소
112931	티지아이컴㈜	박충우	서초구 방배4동 853-23 4층	기준미신고 영업정지 4회	등록취소
113142	(주)에스씨지그룹	박재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9-5 두원빌딩 5층	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회	등록취소
113082	㈜나드원전기	조채훈	서초구 양재동 264-10(3층)	기준미달(기술자)	등록취소
110798	㈜선텔시스템즈	김태순	강서구 등촌동 682-1 센타빌딩 5층 504호	기준미달(자본금) 효력상실	등록취소
112980	㈜한울하우스	김용식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55 광덕빌딩 3층	기준미달(기술자, 자본금) 효력상실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2항, 동법 제15조, 동법 제66조, 동법시행령 16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3. 행정처분 일자 : 2007. 9. 21.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81호

저공해장치(엔진) 반납절차 및 반납대행자 지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부착(개조)한 저공해장치 및 저공해엔진(DPF, p-DPF, DOC, LPG)의 반납절차 및 반납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련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2. 반납확인증명서 발급대상
   o 저공해조치 후 의무운행기간(2년) 경과된 장치
   o 사고·도난·화재·재해 사실확인서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o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천연가스버스, 저공해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 상기 명시된 사항 이외에 장치를 반납코자 하는 차주는 제작사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라며 제작사 책임하에 반납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급함.

3. 저공해장치 반납절차 및 회수대행자(제작사) 안내

① 장치반납 관련하여
좌측의 해당제작사와 협의
※ 저공해장치 제작사를 모르는 경우 맑은서울사업과로 문의

↓

② 반납확인증명서 발급의뢰
(제작사 ⇒ 서울특별시장)

↓

③ 반납확인증명서 교부
(서울특별시장 ⇒ 차량소유자)

↓

④ 반납확인증명서 제출
(차량소유자 ⇒ 차량말소 등록관청)

제작사	대표자	전화번호
SK에너지(주)	신헌철	02)2121-7681
현대모비스(주)	한규환	02)1588-7657
일진전기(주)	최진용	031)686-8012
존슨매티코리아	래리팬츠	02)326-1750
(주)이엔디솔루션	김민용	02)838-2550
후지노테크(주)	이해영	02)445-7667
(주)크린어스	유영환	02)1544-1198
(주)세라컴	조항근	02)744-1777
(주)제너럴시스템	송길홍	02)1577-6721
(주)이룸	최경호	02)1588-8395
(주)엑시언	김종헌	02)2043-1825
(주)엔진텍	이용균	02)529-1292
한국엔엠텍	정락청	02)1588-263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다산콜센터(☎120), 맑은서울사업과(☎02)3707-80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84호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측량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일반측량업 02-01-2049	(주)한별기술	최 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4 (☎02-855-6812)	2007.09.27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02)3707-805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8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규정관련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를 하였으나 같은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기에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등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소재불명, 이사, 미수취 등)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불가능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건설행정과-
시 행 일 2007. 9.
수 신 지에이치씨종합건설(주) 대표자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건설업 등록말소 등</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6">지에이치씨종합건설(주) 대표 정헌하</td></tr>
<tr><td>주 소</td><td colspan="6">관악구 봉천동 1673-21(308) (우 151-849)</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된 사실</td><td colspan="6">등록기준 미달 [2006년도 자본금이 323백만원으로써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500백만원에 177백만원 부족, 2004.4.11~2004.8.17간 기술자가 1인으로써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인에 3인 부족, 2004.8.18~2005.12.18간 건축기술자가 3인으로써 등록기준 5인에 2인 부족, 2005.12.19~2006.6.30간 건축기술자가 4인으로써 등록기준 5인에 1인 부족]</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td></tr>
<tr><td colspan="2">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2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청 문 실 시</td><td>기관명</td><td>서울특별시</td><td>부서명</td><td>건설행정과</td><td>담당자</td><td>한홍재</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소문별관 1동 6층</td><td>전화번호</td><td>3707-9449</td></tr>
<tr><td>일 시</td><td colspan="5">2007.10.15(월) [14:00~15:00]</td></tr>
<tr><td>장 소</td><td colspan="5">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소문별관 1동 6층</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4">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td></tr>
<tr><td>성 명</td><td colspan="4">정남영, 정일영</td></tr>
</table>

서 울 특 별 시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사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지참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 1 항(제31조제 3항)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 견 제 출 인 주 소 :

(전호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87호

2007년도 제18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심의일시 : 2007. 9. 20(목) 14:00

나. 심의장소 : 별관2동 2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7건 11작품(조각6, 회화4, 기타1)

라. 심의결과

○ 승 인 : 10작품 (조각5, 회화4, 기타1)

○ 재 심 : 1작품 (조각1)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02)3707-84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술장식품별 심의결과

(제18차 심의위원회 - 2007. 9. 20 목)

연번	설치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건축주(신청인)
1	서초구 서초동 1321-20	회화	유기학적 기하학(Organic Geometry)	승인	-	삼성물산(주) 이상대
2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조각	여름이야기	승인	-	여의도한성아파트 재건축조합
		회화	잔칫날 (Festival)	승인	-	
		회화	시그널가든 SP4	승인	-	
3	중랑구 망우동 495	조각	화합-생성의 집	승인	- 승인조건 ·LED 전구 설치 위치에 투시도와 같도록 청색강화유리로 LED 등을 보호 할 것 ·방수에 유의하여 제작 할 것	한일건설(주) 장종수
4	동작구 상도동 24-52	조각	내마음의 거울	재심	- 조형성 및 안정성 결여 - 작품성 결여 및 건축물과 부조화 - 인체묘사의 조형성 부족 - 황금색의 통일된 칼라 부적절	상도2동지역주택조합 이수건설(주)
5	마포구 상암동 DMC C-5	조각	달빛 소나타	승인	-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장 유영민
		회화	Visual Paradise	승인	-	
6	은평구 불광동 1번지 일대	조각	우리들 세상		취 하	불광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7	강서구 내외발산동 택지개발 4단지	조각	자연을 담은 공간	승인	-	SH공사 최 령
8	중구 저동 1가 1-21-14	조각	탄생의 빛	승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우석
		기타	An Aggreate 07051	승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89호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행정처분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9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업무정지 처분 현황

구분	처분대상	주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감 리 전 문 회 사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필훈)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87-1	업무정지 1월 ('07.10.10~11.9)	-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의 유리공사(T.P.G시스템)에 있어 특기시방서에 의한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건설기술관리법제30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 별표17 제13호
책 임 감리원	서경수 (591213-******)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49 동백아파트 108동 903호	업무정지 3월 ('07.10.10~'08.1.9)	-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의 유리공사(T.P.G시스템)에 있어 특기시방서에 의한 품질 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사무동과 전시동의 연결통로 방수턱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치 않고 공사하도록 감리 소홀 - 바닥 무근콘크리트의 와이어 메쉬 설치위치가 설계도서와 상이함에도 적합한 것으로 검측서류 작성 - 바닥 무근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이 진공배수공법이나 기계마감공법으로 시공하도록 감리소홀 - 옥상 배수홈통의 두께가 설계상 3mm이나 1.5mm의 두께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감리 소홀	건설기술관리법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 별표6 제3호 건설기술관리법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 별표6 제5호나목 건설기술관리법제3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 별표6 제6호가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9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번호	구분	등록일자	양도자			양수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 등록번호
110644	양도양수 (법인전환)	2007. 9.20	수풍정보통신 박유식	서울시마포구 도화동538번지 성지빌딩 1414호	110-22-91611	수풍정보통신 (주) 박유식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538번지 성지빌딩 1414호	110111-371837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실(☎ 02)6360-4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9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0741	2007. 9.20	(주)브리시넷 서영석 110111-365243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7-12경향빌딩3층
2	200742	2007. 9.20	(주)순성이엔씨 송이범 110111-0851396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60-29
3	200743	2007. 9.20	(주)팀스네트웍스 허범식 110111-3511931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67-53서주빌딩2층
4	200744	2007. 9.20	디지털홈서비스(주) 지학래 110111-228371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1에덴빌딩2층
5	200745	2007. 9.27	엔코딩패스(주) 박국현 110111-3260166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505-14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708호
6	200746	2007. 9.27	(주)위트콤 박상환 110111-175345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907-4 석교빌딩4층
7	200747	2007. 9.27	백상기업(주) 김정이 110111-034379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51-1 성우빌딩4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95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등록 일자	합병된 법인				합병후 존속 법인			
		공사업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 인 등록번호	공사업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 인 등록번호
합병	2007. 09.21	110919	자성텔레콤(주) 최두현	서울 서초구 양재동264-10	110111-2194001	110919	(주)동양이엔씨 최두현 崔斗賢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110111-0429963
			(주)동양이엔씨 최두현 崔斗賢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110111-042996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98호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측량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일반측량업 02-01-2050	(주)도원종합 측량기술단	박대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134-28 201호 (☎02-951-4425)	2007.09.28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02)3707-805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00호

도시계획시설(능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안) 열람

1. 건설부고시 제498호(1971.8.0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21호(2007.9.20.)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광진구 능동 18번지 일대 능동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실시계획(안)을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칭 : 능동근린공원 재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사업규모 : 560,552㎡
      ○ 사업내용 : 공원 재조성사업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마. 사업의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008. 5 .31.까지
   바.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실시설계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과 및 녹지사업소 시설과 사무실
3.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원과(☎ 02)6321-4177) 및 녹지사업소 시설과(☎ 02)843-5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12973	㈜대수엔지니어링 (박종철)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8 4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2	113294	㈜세광멀티컴 (고현옥)	서울 중구 신당5동 142-2 상명빌딩 3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3	113296	새턴정보통신㈜ (김영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6 외교빌딩 6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4	113380	(주)대한씨앤씨 (송민종)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7-3 성제빌딩 201호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5	113381	어드밴텍테크놀로지스(주) (최영준)	서울 강서구 등촌3동 684-1 에이스테크노타워 1201호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6	113394	(주)피엠씨통신 (김진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42-47 대진빌딩 203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7	113396	커머스네트웍스(주) (이문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9-5 남경빌딩 3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8	113415	(주)엠피엠텔레콤 (이영목)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9-17 영진빌딩 4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9	113420	케이디정보기술 (정진원)	서울 종로구 행촌동 180-17 행촌빌딩 1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1월15일 (07.10.5~07.11.19)

연번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0	113442	(주)지텍이엔씨 (백승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2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1월15일 (07.10.5~07.11.19)
11	113443	(주)케인기술 (남기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8-9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1월15일 (07.10.5~07.11.19)
12	113445	한빛멀티미디어통신(주) (이한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3 충무빌딩 710, 711호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13	113454	조승테크(주) (조영해)	서울 송파구 삼전동 28-10 206호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14	113469	등우산업제어(주) (정일우)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빌딩 804호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3월 (07.10.5~08.01.04)
15	111228	유원서비스㈜ (조영철)	서울 강동구 상일동 238 지하	기준미달 (자본금, 조합탈퇴)	영업정지 1월 (07.10.5~07.11.04)
16	113316	㈜아이눈정보통신 (송영숙)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5-34 정우빌딩 2층	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07.12.17~08.01.16)
17	200175	베스티안파트너스㈜ (오현성)	서울 마포구 동교동 LG팰리스빌딩 165-8번지 817호외6호	기준미달 (자본금, 조합탈퇴)	영업정지 1월 (07.10.5~07.11.04)
18	200031	㈜다다정보통신 (유현정)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4-17 삼성빌딩 3층	기준미달 (자본금, 조합탈퇴)	영업정지 1월 (07.10.5~07.11.04)
19	113476	㈜테크노스퀘어 (김수병)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탈밸리5차 1110호	지연신고 (대표자, 소재지)	영업정지5일 (07.10.5~07.10.09)
20	111608	㈜우리넷정보통신 (김강희)	서울 송파구 송파동 98-33 화인빌딩 2층	지연신고 (소재지)	영업정지5일 (07.10.5~07.10.09)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동법 제15조, 동법 제66조제2호의 3, 동법 제66조 3호, 동법 제66조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3. 행정처분 일자 : 2007. 10. 5.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3)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07-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1. 용산구고시 제2007-21호(2007.6.14)로 결정 고시되고 용산구공고 제2007-366호(2007.8.30)로 열람공고 한 “서계동220의32～서계동217의72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토목과(☎02)710-3405) 및 건설관리과(☎02)710-3401)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서계동220의32～217의72간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구간 : 서계동220의32～서계동217의72간
다. 사업규모 : 도로확장 ☞ 폭=4m→6m, 연장=20m
라. 사업시행자 : 용산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08.8.31
바. 수용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따로붙임 : 토지 및 물건조서 각 1부.

토 지 조 서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1가 25번지
○ 사업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명 : 서계동220의32~217의72간 도로확장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서계동220-33	대	9.7	9.7	대	고제철 금광기업(주)	광주 북구 누문동 19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2	서계동220-34	대	11.8	11.8	대	고제철 금광기업(주)	광주 북구 누문동 19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3	서계동224-79	도	3.9	3.9	대	(국)용산구					
4	서계동224-82	대	0.8	0.8	대	고제철 금광기업(주)	광주 북구 누문동 19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이 하 여 백				
계				26.2							

물 건 조 서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1가 25번지
○ 사업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명 : 서계동220의32~217의72간 도로확장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m)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서계동 220-34	담장	블록 (기초포함)	H=1.6		18m		고제철 금광기업(주)	광주 북구 누문동 19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2	서계동 220-34	입간판	지주식 (철제)	□0.9*0.9 H=6m		1개		유순자	용산구 서계동 220-5				
									이 하 여 백				
		계			0								

◈ 광진구고시 제2007-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 작성

1. 서울시 광진구 고시 제22호(2007.8.2)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제2007-423호(2007. 9.6)로 열람공고한 “아차성길 교차로 구조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02)450-1405~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사업의 개요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총 사업규모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비고
광진구 광장동 331-3번지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아차성길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광장동 331-3번지 도로모퉁이변 가각정리	서울시광진구고시 제22호 (2007.8.2)	

다.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광진구 자양동 777)

라. 사업의 기간 : 작성고시 시보게재일로부터 5년간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02)450-1405~7) 및 건설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1. 사 업 명 : 아차성길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
4.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5.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광진구 광장동	331-3	대	490	127	정동찬	노원구 월계동 925 대동아파트 102-603	4/10	(주)국민은행 (상계역지점)	중구 남대문로2가 9-1번지	근저당권	
						김차자	〃	1/10				
						정종혁	전남 나주시 삼영동 355 부영아파트 102-809	2/10				
						정종훈	서초구 반포동 830 반포아파트 77-402	9/100				
						이명숙	〃	7/100				
						정일권	〃	7/100				
						정이지	〃	7/100				

물 건 조 서

1. 사 업 명 : 아차성길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
4.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5.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광진구 광장동	331-3	테라스	목 재	8㎡	김민태	동대문구 전농동 53-1번지				
			휀 스	철 재	12m	김희숙	서초구 서초동 1308-6호 1층 악바리				

◈ 성북구고시 제2007-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91호(1995.10.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으며 성북구공고 제2007-554호(2007.8.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동선동4가 276-1~295-4간 도로확장공사”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와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02)920-3405) 및 건설관리과(☎02)920-3400)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6-1~295-4간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명칭 : 동선동4가 276-1~295-4간 도로확장공사
라. 사업의규모 : B=12m, L=45M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09.9.30일 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및 토지조서 : 별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토목과(☎02)920-3405) 및 건설관리과(☎02)920-3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명 : 성북구청장
○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성북구 구청길14
○ 사업의 종류 : 동선동4가276-1~295-4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주 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1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6-3	대	19	19		김정진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6-1				
						장경자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6-1				
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5-3	대	21.7	21.7		홍기수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1가 117				
3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2-1	대	13.4	13.4		박철완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3-2	동선1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5	근저당권설정	
4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3-1	대	17.9	17.9		김종륜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3	동선1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5	근저당권설정	
5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2-1	대	37.2	37.2		이인기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미아역지점)	근저당권설정	
						이희구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2				
6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295-21	대	55	55		이춘애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5-4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강남역지점)	근저당권설정	
						김창원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5-4	동선1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5	근저당권설정	
						김승원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18-1 광장극동아파트 14-905				
7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4-1	대	19.2	19.2		유영남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4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명 : 성북구청장

○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성북구 구청길14

○ 사업의 종류 : 동선동4가276-1~295-4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물건지주소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1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2	건물/ 지층	목조	24.6		박철완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3-2	동선1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5	근저당권설정	
		건물/ 1층	연와조	13.9							
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3	건물/ 지층	화장실	11.2		김종륜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3	동선1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5	근저당권설정	
		건물/ 1층	목조	19.1							
3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4	건물/ 1층	목조	18		유영남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4				
4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6-1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1.1		김정진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6-1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10.4		장경자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6-1				
		건물/ 2층	철근콘크리트조	10.4							
		건물/ 3층	철근콘크리트조	10.4							
		건물/ 4층	철근콘크리트조	10.4							

연번	물건지주소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4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6-1	건물/ 5층	가건물	10.4							
5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5-4	건물/ 지층	세멘부록	6.6		이춘애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5-4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강남역지점)	근저당권설정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17.1		김창원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5-4	동선1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5	근저당권설정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15.7		김승원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18-1 광장극동아파트 14-905				
		건물/ 2층	철근콘크리트조	15.7							
6	서울시 동선동4가 302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22.1		이인기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2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미아역지점)	근저당권설정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26.9		이희구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2				
		건물/ 2층	철근콘크리트조	26.9							
		건물/ 3층	연와조	26.9							
		건물/ 1층계단	계단	2.8							
		건물/ 2층계단	계단	2.8							
		건물/ 3층계단	계단	2.8							

◈ 성북구고시 제2007-88호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966-1일대의 도시계획시설(하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성 북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하천	지방 2급	정릉동 957	정릉동 428	3,670	7~50	122,999	85.1.14 서고25	
변경	하천	지방 2급	정릉동 957	정릉동 428	3,670	7~50	123,535		정릉동966-1:458㎡증 정릉동383-97:78㎡증 면적536㎡증

나.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02)920-3657), 재무국 지적과(☎02)920-323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강북구고시 제2007-75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5-59(2005. 10.20)호에 의거 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시보에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4동 576-51번지 일대 -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변경없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 사업의 명칭 :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라. 사업의 내용 - 변경없음

○ 면 적 : 233㎡

○ 사업내용 : 휴게시설, 전시장, 무궁화식재등

마. 사업기간

○ 당 초 : 인가일로부터~2006. 12. 31

○ 변 경 : 인가일로부터~200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 변경없음

사. 위치도등 관련서류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아.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02)901-6395~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수 량	비 고
기반조성	성토, 포장	233㎡	
식 재	수 목	5,250주	
	초화류 식재	3,000본	
휴게시설	휴게정자, 전시장등	1 식	

○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강북구수유4동 576-51	대	233	233		국 (재정경제부)				

◈ 도봉구고시 제2007-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5호(1973.12.03)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13호(2005.3.03)로 변경고시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07-597호(2007. 9. 6)로 열람공고한 도봉구『창동 286-20~286-22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 10월 4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동 286-20~286-22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창동 286-20~286-22호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 12m, 연장 2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길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08.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하수과(☎02)2289-1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창동 286-20 ~ 286-22호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창동 286-20	대	17	17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12-7	삼풍물산(주)			
2	창동 286-28	대	15	15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12-7	삼풍물산(주)			
3	창동 286-22	대	7	7	서울시 도봉구 창동 286-3	이상락			
4	창동 286-29	대	2	2	서울시 도봉구 창동 286-3	이상락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창동 286-20 ~ 286-22호간 도로개설

연번	권리의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창동 286-22	수목	은행나무	1주	도봉구 창동 286-3	이상락			

◈ 강서구고시 제2007-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392호(2002.11.15)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64호(2005. 9. 8)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2007-53호(2007. 8. 9)로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07-752호(8.30)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친 강서구 마곡동 56-2호 일대 마곡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57-868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마곡체육공원

나. 사업시행지 : 강서구 마곡동 56-2호 일대

다. 사 업 규 모 : 20,000㎡(변경없음)

라. 사업의 내용 : 기반시설, 조경시설, 관리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배드민턴장, 체육센터, X-게임장), 녹지 및 기타.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사업준공 : 인가일로부터 2007. 11.30. 까지

사. 변경내용 :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산책로, 휴게소 위치 변경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 붙임

자.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비치(☎02)2657-868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 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980-16호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마곡체육공원 조성)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28필지			20,000					
1	마곡동 56-1	제방	5,455	4,804	이기철	양천구 목동 912 목동APT 525-102			
2	마곡동 55-8	답	2	2	국유지	건설교통부			
3	마곡동 56-2	유지	96	96	유용담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APT 204-702			
4	마곡동 56-5	답	489	112	이기철	양천구 목동 912 목동APT 525-102			
5	마곡동 56-16	유지	873	873	엄수자외 1인	마포구 망원동 313-30			
6	마곡동 56-17	답	1,676	1,676	이풍선	강서구 방화동 247-198			
7	마곡동 56-18	답	1,941	1,937	유용담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APT 204-702			
8	마곡동 57-1	답	856	856	강지홍	은평구 역촌동 25-112			
9	마곡동 66-2	답	5,098	730	국유지	건설교통부			
10	마곡동 67-1	답	5,049	1,610	이양순외 2인	강서구 방화동 333			
11	마곡동 68-1	답	996	996	국유지	건설교통부			
12	마곡동 68-5	답	2,273	1,360	국유지	건설교통부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3	마곡동 68-6	답	1,323	1,323	국유지	건설교통부			
14	마곡동 68-7	답	659	659	국유지	건설교통부			
15	마곡동 68-8	답	662	662	국유지	건설교통부			
16	마곡동 69-2	유지	119	119	시유지	서울특별시			
17	마곡동 69-14	답	1,507	817	시유지	서울특별시			
18	마곡동 71-3	도로	2,876	86	김동석외 19인	성동구 성수2가 532-44			
19	마곡동 407	유지	39,760	490	국유지	건설교통부			
20	마곡동 69-11	도로	148	148	시유지	서울특별시			
21	마곡동 69-4	제방	7	7	국유지	건설교통부			
22	마곡동 55-11	잡종	15	15	국유지	건설교통부			
23	마곡동 69-13	잡종	6	6	국유지	건설교통부			
24	마곡동 69-18	잡종	50	50	박원덕	강동구 고덕동 670 시영APT 3-205			
25	마곡동 69-19	잡종	33	33	박원덕	강동구 고덕동 670 시영APT 3-205			
26	마곡동 69-17	답	14	14	시유지	서울특별시			
27	마곡동 69-12	답	492	492	시유지	서울특별시			
28	마곡동 55-3	제방	366	27	국유지	건설교통부			

◈ 강서구고시 제2007-71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1호(1997.01.31)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2호(2006.12.14)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된 까치산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획지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계획내용	
			기정	변경
까치산역 자구중심 자구단위 계획구역	화곡동 343-52	154.4	획지	획지
	화곡동 343-53	129.5		
	화곡동 343-55	126.9		
	화곡동 343-80	120.9		
	화곡동 343-69	132.2	공동개발	
	화곡동 343-56	323.6		-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02)2600-684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07-77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22호('84.1.14)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229호('87.4.3)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310호('87.5.4)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7-504호(2007.9.6)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오류동 55번지 주변 하수암거 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2007년 10월 4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오류동 55-70~55-79 번지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 명칭 : 오류동 55번지 주변 하수암거 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 하수도 □2.0m × 2.0m, L=18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길 340(구로본동 435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 55번지 주변 하수암거 확장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55-70	대	19	대지	황원선	서울 구로구 오류동 55-55				
2	55-79	대	1	대지	황원선	서울 구로구 오류동 55-55				55-71

물 건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55-70	점포 (1층)	시멘트블록조/슬래브	23	점포	황원선	서울 구로구 오류동 55-55			55-55
		창고 (2층)	시멘트블록조	18	창고					
		전기 (계량기)	-	1식						
		계단	철재	1식						
		담장	시멘트블록	1식						

영 업 권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상호	물건의 종 류	수 량 (식)	영업권 종 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55-70	은혜화원	영업권	1	도소매	황효철	서울 구로구 오류동 55-56	

◈ 영등포구고시 제2007-56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71호(1981.3.14)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06-32호(2006.7.20)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7-541호(2007.8.9)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영등포시장로타리일원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앞)~영등포시장 4거리간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경관과(☎02)2670-36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1번지 외 4필지 【영등포시장로타리일원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앞)~영등포시장 4거리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2) 명 칭 : 영등포시장로타리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다. 사업의 규모 : 폭=18.3~91.6m, 연장=182.75m, 연면적=9,385.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주) 대표자 박재성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원정빌딩 503호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7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참조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도시경관과(☎02)2670-36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1	도	10,100.5	1,693	서울특별시				
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3-3	도	8,292.9	1,785	서울특별시				
3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3-2	도	1,738.8	1,001	서울특별시				
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4-1	도	9,497.5	1,855	서울특별시				
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7-1	도	6,013.2	1,509	서울특별시				
소 계				35,643	7,843					

◈ 동작구고시 제2007-6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4-97호(2004.12.06)호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상도2동지역주택조합 외1)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개설공사 결정 및 지적고시된 상도동173-3~161-3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동 작 구 청 장

1.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3-3~161-37간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명칭 : 상도동173-3~161-37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 규모 : 폭원 8m, 연장214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상도2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최정옥 : 태려건설(주) 대표이사 최창동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01- 155호 3층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홍국생명빌딩 18층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8.4.30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 별첨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지장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동작구고시 제2007-6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1. 우리구에서 입안한 아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도로)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02) 820-981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동 작 구 청 장

   가.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도로)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동작구 상도동 54-51호외 4필지	0	증1,079	1,079	-	
신설	공공공지	동작구 상도3동 296-6호외 22필지	0	증812.3	812.3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	8	국지도로	32.5	신대방동 712	신대방동 607-20	일반 도로		

다.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 강동구고시 제2007-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강동구고시 제2001-125호(2001.12.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07-476호(2007. 8.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되어 강동구고시 제2007-44호(2007. 8. 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된「암사동 184~176-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물건조서의 소유자 변경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암사동 184~176-3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암사동 184~176-3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6m, 연장 220m

라.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변경있음)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아.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강동구 도로과(☎02)480-1405)에 관련도서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1차)

○ 사 업 명 : 암사동 184~176-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당초	암사동 182-1	3,418	137	전	2/7	나성옥	서울 강동구 암사동 182				
						3/7	정 철	서울 강동구 암사동 182				
						2/7	이종덕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162-5				
	변경	변 경 사 항 없 음										
2	당초	암사동 182-3	2,863	35	전		김형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9 현대@ 65-901				
	변경	변 경 사 항 없 음										
3	당초	암사동 176-3	2,182	5	잡		김창옥	서울 도봉구 미아동 852-106				
	변경	변 경 사 항 없 음										
4	당초	암사동 608-2	2,280	103	전		조 훈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7-30 방배3차 e-편한세상 105-1503	(주)에스디아이	인천 중구 신흥동3가 60-16	채무자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영등포중앙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변 경 사 항 없 음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1차)

○ 사 업 명 : 암사동 184~176-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층수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당초	암사동 182-1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3	2/7	나성옥	서울 강동구 암사동 182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9	3/7	정 철	서울 강동구 암사동 182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7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5	2/7	이종덕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162-5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0							
	변경	암사동 182-1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3		김만재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가락시영@ 118-210호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9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7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5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0							

연번	구분	소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층수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2	당초	암사동 182-3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10		김형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9 현대@ 65-901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5							
	변경	암사동 182-3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10		차귀환	강동구 암사3동 266-13호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5							
3	당초	암사동 608-2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6		조 훈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7-30 방배3차e-편한세상 105-1503	(주)에스디아이	인천 중구 신흥동3가 60-16	채무자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영등포중앙지점)	근저당권자	
	변경	암사동 608-2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6		김염태랑	서울 강동구 암사2동 178-26호				
4	당초	암사동 608-8	건물	담장		0.15		박춘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8-16 금란빌라 비-301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의료보험회관(강동지사)	압류(자격 징수부-134)	
										박춘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8-16 금란빌라 비-301	채무자	
										(주)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명일동지점)	근저당권자	
										대한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서울지역본부)	전세권자	
	변경	변 경 사 항 없 음											

◈ 강동구고시 제2007-6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일자산자연공원 조성)실시계획(변경) 인가

1. 건설부고시 제465호('71.8.6) 및 서울시고시 제2004-94호(2004.4.6)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21호(2005.7.28)호로 도시관리계획(일자산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되고, 강동구고시 제2005-50(2005.8.11)호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69호(2007.3.15)호로 열람 공고되어 강동구고시 제2007-22호(2007.5.17)도시계획시설사업(일자산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된 일자산자연공원 조성에 대해 행정구역(법정동 명칭 및 지번)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2007년 10월 4일
강 동 구 청 장

가. 실시계획(변경)의 주요내용(경미한 변경)

1)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02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62-1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사업의 명칭 : 일자산자연공원 조성

3) 사업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적 : 962㎡
- 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4)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0번지 강동구청장

5)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08.06.31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02)480-1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관계인

□ 토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당초	길동 202	962	962	답	이주훈	길동 202	강동구	강동구 징수과	압류	소재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동 및 주소변경
								가나안신용협동조합	하남시 풍산동 217-3	근저당권	
	변경	둔촌동 562-11	962	962	답	이주훈	둔촌동 562-11	강동구	강동구 징수과	압류	
								가나안신용협동조합	하남시 풍산동 217-3	근저당권	

□ 지장물(건축물) 조서

번호	구분	소재지	건물면적(㎡)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용도	구조	비 고
			계	허가		성명	주소					
				건축물 대장면적	증축							
1	당초	길동 202	60	29.75	30.25	이주훈	길동 202	이주훈	-	주택	판넬/블럭	소재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동 및 주소변경
	변경	둔촌동 562-11	60	29.75	30.25	이주훈	둔촌동 562-11	이주훈	-	주택	판넬/블럭	

□ 지장물(비닐하우스) 등 조서

번호	구분	소재지	지장물	면적(㎡)	소유자		용도	구조	비 고
					성명	주소			
1	당초	길동 202	비닐하우스 (4개동)	315	이주훈	길동 202	1개동은 표고재배 3개동은 창고	비닐/철골	소재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동 및 주소변경
	변경	둔촌동 562-11	비닐하우스 (4개동)	315	이주훈	둔촌동 562-11	1개동은 표고재배 3개동은 창고	비닐/철골	
2	당초	길동 202	휀스	140m	이주훈	길동 202	가림막휀스	EGI	
	변경	둔촌동 562-11	휀스	140m	이주훈	둔촌동 562-11	가림막휀스	EGI	

구 공 고

◈ 도봉구공고 제2007-66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열람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1-66호(2001.10.15)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2-26호(2002.5.6)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인가하여 도봉구고시 제2002-35호(2002.6.20),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3-74호(2003.9.25),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4-53호(2004.8.5) 및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4-79호(2004.12.15)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봉동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 2289-186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변경없음
나. 시업시행자
  ○ 당초 : 도봉구청장
  ○ 변경 : 서울특별시장
다. 사업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라. 사업의 규모 : 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당초 : 사업시행일로부터 2005.12.31
  ○ 변경 : 사업시행일로부터 2009.12.31
바.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사. 관계도서 : 생략(도봉구청 공원녹지과 비치)

◈ 서대문구공고 제2007-6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1. 건설부고시 제334호(1968.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률 제9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열람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1동 446-325 ~ 446-156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연희1동 446-325~446-156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 폭=12m 연장=62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3동 168-6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 부터 2년간
바.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 제2조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 부터 20일간

자.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토목과
(본관 5층)

차.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토목과(☎ 02)330-1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연희1동 446-325~446-156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1	연희1동 446-325	대	125	1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연희1동 446-220	대	549	549	남궁순애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81				
					전성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3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김석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303				
					유영희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13동 203호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연희1동 446-325~446-156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면적(㎡) 및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1	연희1동 446-156	대문		2식	부관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156				
		담장		1식						
2	연희1동 446-220	계단	철제	1식	남궁순애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81				
					전성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303				
		수목		1식	김석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303				
					유영희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13동 203호				
3	연희1동 446-285	화단		1식	김창종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6-4 라이프연희빌딩 302호				
		수목		1식						
4	연희1동 446-274	담장		1식	심무섭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274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독상공회의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8-2 한남프라자빌딩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6척 (기선2척,부선4척)	제11회독일경제 아시아태평양회의 문화행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7. 10. 3. ~ 2007. 10. 6.	2007. 9. 20.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3척 (기선1척,부선1척, 보트1척)	동호철교 수중우물통 청소 선박운항	2007. 9. 20. ~ 2007. 10. 15.	2007. 9. 20.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사용) 면 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곽흥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91-5 11/1	한 강 (행주대교~잠실대교하류)	선박1척 (보트1척)	개인수상레저 활동 선박운항	2007. 9. 20. ~ 2007. 12. 31.	2007. 09. 20.

사업소공고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7-58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송 파 소 방 서 장

업 종 (분 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제송파2007-30호 (2007.09.28)	(주)소정이엔지 (110111-3253236)	정춘배 (69.10.07)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5-14 율암빌딩 201호	☎02)422-2357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02)431-4109)로 연락바랍니다.

기 타

◈ 경북포항시공고 제2007-762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골재채취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적정여부를 일제점검코자 사전통보 하였으나 폐업 및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포 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2.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청문 세부 일정	비고
소 계		6개 업체			
(주)성 일	박창일	육상('04-2)	북구 흥해읍 마산리 127-4 흥해종합상가 A동201호	10:00~10:30	
(주)해덕개발	구형모	육상('03-5)	북구 용흥1동 131-11	10:30~11:00	
(주)금강골재	오창환	육상('03-1)	북구 신광면 토성리 184	11:00~11:30	
대양기업(주)	강구식	육상('02-1)	북구 동빈2가 113-70 제일오피스텔 504호	11:30~12:00	
(주)범 호	정동욱	육상('99-2)	남구 인덕동 71-9	14:00~14:30	
(주)융 성	김천옥	육상('93-28)	북구 죽도2동 56-23	14:30~15:00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골재채취업 폐업(포항세무서 확인)
   - 수취인 부재로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적정여부 점검불가
4. 법적근거 : 골재채취법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 1항
5. 청문사항
   가. 청문기관 및 담당부서 : 포항시 재난안전과 하천관리담당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 054)270-3542)
   다. 일 시 : 2007년 10월 16일 (10:00~15:00)
   라. 주재자 : 포항시청 재난안전과 이대수
6.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 2007. 10. 1. ~ 10. 15. (15일간)
7. 본 처분에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청 재난안전과 (☎ 054)270-3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 시보 제2792호(2007.9.13)에 게재된 입법예고 제2007-1643호, 제2007-1664호, 제2007-1676호, 제2007-1683호, 제2007-1708호의 내용 중 일부(의견제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정정전	정정후
2007. 10. 3까지(20일)	2007. 10. 4(21일)